

유럽의 이슬람화와 난민 선교

김수길

I. 들어가는 말

유엔난민기구(UHCR)는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0년 1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한국전쟁은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설립되어 처음으로 다국적 연합군이 참전한 전쟁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난민사태는 72년 동안 1억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현재 가장 많이 유엔난민기구(UHCR)의 보호를 받는 난민은 시리아 아랍 공화국 680만, 우크라이나 570만, 아프가니스탄 570만이다. 난민 또는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 people)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륙은 유럽이다. 전 세계 인구 80명당 1명이 난민인데, 전쟁 또는 자연재해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이다. 난민 문제와 이주민 문제로 가장 뜨거운 지역은 유럽의 국가들이다. 북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다가 지중해에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이미 유럽의 이슬람 화와 난민 문제는 문명의 충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었다. 유럽대륙은 최근 대량 난민사태가 발생 전에도 이슬람 선교의 핵심인 이미 유라비아(Eurabia)화가 되어버렸다.

유럽 각국은 지난 반세기 전까지 식민지로 삼았던 피식민지에서 온 이주자가 많아졌다. 유럽은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다종교화 된 대륙이 되었다. 2020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주자가 유럽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자 비율은 세계 인구 대비 11%를 넘었다.

II. 초기 유럽 각국의 이슬람 유입과 이민정책

2차 대전 후 50~60년대의 유럽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경제부흥기였다. 패전국 독일을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필요한 인력을 자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독신으로 온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이민으로 초청하여 대거 정착하게 된다. 당시 유럽의 교회는 자국에 온 이슬람들이 하나님을 보내 준 사람들이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들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

을 선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1. 영국의 이슬람 이주민과 다문화 정책(Multicultural policy)

1962년 10월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우간다는 1971년 이디아민(Idi Amin)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1972년 당시 제조업과 무역 분야 등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6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계(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를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영국 레스터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이주하게 된다. 레스터는 종교개혁의 상징인 존 위클리프 목사가 11년 동안 목회를 했고, 현대선교의 선구자 윌리엄 캐리 목사가 거주했던 전통적인 기독교의 도시다. 그러나 갑자기 몰려든 이슬람과 힌두교도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위한 선교나 다른 방법을 생각지 않았다. 다만 이민자들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 하지만 레스터 시 의회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여러 사회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정치적 통합과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유럽의 모델이 되는 도시로의 성장이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역시 다양한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었다. 그러자 기독교는 도시의 중심지를 비워주고 새로운 구역으로 이주했다. 그들이 비워둔 교회와 지역은 레스터시의 민족화합적인 정책 차원에서 인종평등권 위원회 (Th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의 주재 아래 처음에는 이슬람사원이 아닌 이슬람문화원(Islamic Cultural Center)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센터는 사원이 된다. 그래서 레스터시는 영국에서 교회 건물이 이슬람사원(모스크)으로 바뀌는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난민과 이주자가 40%를 넘어 다문화 교육이 세계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레스터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5년간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다른 어떤 공동체 인구보다 10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영국의 다문화 정책으로 영국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무슬림 문제는 종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다문화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다. 미국에 사는 모든 민족을 미국문화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녹이면 각 문화도 존재하지만 다양성 속에서 미국문화(American culture)를 융해해 낸 그것에 착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국의 다문화 정책은 각 민족의 문화가 녹여져서 영국 문화(British culture)가 아닌 자기들 고유의 문화만 존재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이 되고 말았다. 결과 영국인들은 이슬람 난민들을 막을 방법은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서 감당할 수 없어서 유럽 연합을 탈퇴했고 브렉시트(Brexit)라는 새 용어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일반화시켰다.

2. 프랑스의 마그레브와 라이시테(Leïcité)

프랑스는 공화국 헌법의 기본인 관용정신(tolérance)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이슬람에 포용적이었다. 그래서 식민지였던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등 마그레브(Maghreb) 국가에서 프랑스 경제부흥기인 60년~90년대에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민 초기에는 원주민보다 소수여서 이슬람 난민 유입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프랑스 내무부 장관 Claude Guéant는 약 500~600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거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중 30~40% 아주 강한 전통적인 이슬람이라고 했다. 현재 프랑스에는 80% 이상이 앞서 말한 북아프리카 3개국(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과 터키 출신은 각각 9%를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 백인 원주민이 이슬람으로 회심이나 개종한 자는 개략적으로 4만 명, 즉 전체 모슬렘 인구의 1%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1세대 취업 이민세대, 프랑스에서 출생한 이민 2~3세대인 뵈르(beur)세대, 최근 정착한 유학생 세대 등 크게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분포된 무슬림에 대해서 영국처럼 다문화 정책이 아닌 프랑스 공화국의 비종교 원칙인 라이시테(Leïcité) 적용했다. 가톨릭과 개혁신교회는 라이시테를 인정하지만 가톨릭이 국교로 권위를 복귀하는 것을 원하는 왕정주의자들과 이슬람은 인정치 않았다. 특히 이슬람은 종교, 문화적으로도 주류 프랑스인과 다르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 사회화 된 2세(뵈르)들 역시 프랑스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다. 프랑스 헌법에 세속주의 중심의 공교육이 명시된 원칙에 따라 무슬림 여성 복장인 부르카(burqa) 착용 금지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 2004년 프랑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상징하는 옷과 장신구 착용을 금지했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hijab)과 부르카는 물론 기독교의 십자가 장신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이슬람 세력의 증가로 인해 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 프랑스는 아마도 이슬람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이슬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프랑스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오래전에 일어난 샤를리엵도(Charlie Hebdo)의 테러와 포트 뱅센느(Port Vincennes)에서 일어난 유대인 식품점 테러사건과 바타클란(bataclan) 극장의 테러는 프랑스의 문제만 아니라 전 유럽의 사건이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건이었다. 2023년 6월 27일 일어난 알제리 마그레브계 출신의 17세 청소년 나헬 메르주크(Nahel Merzouk) 사건은 파리 외곽의 낭테르(Nanterre)에서 불심검문 중 발생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수많은 차량과 건물들이 파괴되고 결국 군대가 동원되어 1천 명 이상이 체포됨으로 진압된 나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영국의 다문화 정책에 반하는 공화국 헌법 아래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가고자 했으나 자주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 속에는 헌법에 하나 되지 못한 이주민과 이슬람의 분노가 내포된 것이다.

3. 독일의 이슬람, 초청된 노동자들(Gastarbeiter)

독일의 이슬람 역사는 최근에 문제가 되는 중동지역 난민을 제외하면 터키 노동 이민자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독일은 이미 1차 대전을 기점으로 모든 식민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유입시킬 수 없었다. 그 결과 독일은 오스만 튀르크 제국시대부터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터키로부터 이슬람 초청노동자(Gastarbeiter)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이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떠날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국 노동자 모집을 중지하자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터키 이주노동자들은 장기, 혹은 영구정착을 결정하고 오히려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독일은 자국 내 장기거주 노동자들에게 국적취득절차를 완화하자 터키인은 독일 내에서 가장 큰 이주민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2004년 독일 정부는 이민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인정하기 싫었던 이민 국가임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이민과 난민과 거리가 먼 정책을 2004년까지 진행해온 나라이다. 독일에서 외국인인 초청된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일관해 왔지만 2004년 이후 급격하게 불어나는 이민자들과 난민 문제 특히 2015년 이후 수백만의 난민 유입은 반이슬람 운동단체인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 페기다(PEGIDA)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극우 정당이 등장하게 된다. 히틀러(A. Hitler)이후 지금까지 과거사 반성을 이어온 독일에서 '극우의 정당' 출현은 처음에는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현재는 제3당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들의 정치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AFD당이 당선되어 독일을 혼란스럽게 하였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독일에서 극우세력의 영향력은 제1, 2차 세계대전 전의 민족주의가 다시 태동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것이다.

III. 재스민 혁명으로 인한 난민 발생과 유입 배경

1. 최근 난민과 발생과정

최근에 논의되는 유럽 난민 사태(European migrant crisis)는 2015년 4월 유럽으로부터 지중해를 통해 오던 2,000명의 난민을 실은 난민선 5척이 한꺼번에 난파되어 약 1,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량 난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 해 무허가 청과물 노점을 운영하던 26살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med Bouazizi)가 분신자살을 했다. 이유는 부패한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이 위협을 받자 항의의 차원으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극심한 생활고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억압통치, 정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등으로 불만이 쌓였던, 다른 젊은이들에게 전해지면서 분노를 촉발하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다. 시위는 튀니지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2011년 1월 14일, 24년간 장기 독재집권을 누리 온 벤 알리(Ben Ali)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면서 북아프리카 마그립 지역에서 처음으로 독재정권이 붕괴한다. 세계 언론들은 튀니지 시민혁명을 튀니지를 대표하는 꽃의 이름을 따서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으로 불렀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은 리비아 이집트를 거쳐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시리아전역은 전쟁터와 폐허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난민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시리아 내전 이전에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후의 예멘,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사헬지대의 기아 난민 등이 가까운 유럽으로 러시를 이루었다.

2. 유럽으로 대량 난민 유입 배경

2014년 12월 28일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던 대형 여객선 Norman Atlantic 호의 해상 화재 사건, (사망 9명 19명 행방불명)이 사건 이후 그리스는 난민 단속을 강화해 대부분 난민은 아테네 근교 난민수용소에 강제 수용한다.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난민수용소에 영향을 미쳐 겨울용 난방비가 부족하여 2015년 2월 3명의 난민이 죽고 난민 폭동이 일어난다. 유럽 연합과 부채 문제로 협상 중이던 그리스의 시리아 정부는 독일에 난민 구호용 재정을 요청하는 한편 그리스 경제지원 협상의 한 카드로 난민을 이용한다. 그러나 기대했던 협상은 실패로 끝나고 그리스는 난민수용소 폐쇄라는 수를 두게 된다. 아테네 Amigdaleza 수용소에서 거리로 나온 난민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치안 부재라는 선물만 안기었다. 어느 정도 경찰의 묵인 아래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 유럽으로 이주하기 쉬운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철길을 이용하여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난민 이동이 공개적으로 시작된다.

난민들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유럽으로의 행렬을 시작한 것에 대하여 유럽 대부분 사람은 휴머니즘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수의 난민들이 밀물처럼 증가하자 다시 난민 문제는 그리스와 북 마케도니아국경에서, 또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고립된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는 선별된 난민만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진행될 때 시리아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로 가기 위해 난민선에 탑승했던 3세 난민 아기 ‘쿠르디’(Kurdi)의 시체가 터키 남서부의 해양 휴양지 보드룸(Bodrum)에서 모래에 얼굴을 묻은 채 발견된다. 난민 어린이의 시체가 해변으로 밀려온 사건은, 난민수용에 반대하던 영국마저도 일정 수의 난민수용을 약속하게 했었다. 독일의 메르켈(Angela Dorothea Merkel)은 난민의 수용을 허락한다. 이때부터 하루에 몇백 또는 몇천 명 통과하던 난민이 이 사건 이후는 몇만 명씩 그리스와 북마케도니아 국경을 지나서 중부 유럽으로 가게 된다. 손에는 메르켈의 초상화를 들고서!

IV. 결론을 대신하여: 솔직함과 회계함

유럽 난민사태는 말씀의 실천화 즉 행동하는 신앙만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럽이 속히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숫자 미상의 무슬림으로 하여금 이 유럽을 뒤덮겠다는 하나님의 경고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참으로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며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믿음에 의지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며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구함, 하나님의 마음이, 현재 일어나는 난민들을 향한 선교의 바른 방법이라고 본다. 유럽 땅에 난민의 출현은 저주가 되든지, 축복이 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선택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며, 교회들이다. 유럽의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유럽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간구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회계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이익과 안전함, 그리고 평안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인내하며 수고로운 자리로 가신 주님의 십자가 길처럼,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애씀과 즉 눈물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를 떠난 유럽의 백성들이 주님을 그들의 입으로 인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상황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 된 유럽인과 이 땅을 찾은 난민들을 통하여 이 땅의 허물어진 성전들을 세우시며 이 땅의 난민으로 디아스포라로 들어온 난민들을, 주께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유럽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하다고 말하지만, 다시금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럽 땅은 스스로 지탱하기도 힘든 노인이요, 깊은 병이 든 환자이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유럽교회에, 무슬림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유럽을 위하여, 유럽의 교회들은 자복하고 회개하여 무능력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께 나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유럽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난민의 출몰이 저주가 아니라 회복이요 축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럽의 이슬람 문제가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경제적인 관점과 초점에만 눈을 맞추는다면 유럽의 오늘이 곧, 우리의 내일이 된다. 한국이 경제적인 이익에만 눈을 돌린다면, 유럽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전쟁 난민과 한국교회의 역할:

우크라이나 전쟁 중심으로

최하영(Ph. D, GMS, ACTS 난민연구소 동유럽난민 연구원장)

I. 서론

오늘날 발생 난민은 크게 전쟁과 자연재해(기후) 난민이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내난민(IDPs)은 7,110만 명, 분쟁(전쟁 등)으로 인한 난민은 6,250만 명, 재난으로 인한 난민은 870만 명이다. 이는 전년도 비해 약 20% 증가한 수치이자 2013년부터 UNHCR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이다. 그중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2022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은 1,690만 명(DIPS 포함)으로¹⁾ UNHCR의 집계 한 이래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만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Alex Callinicos)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 강대국 간 충돌로 본다.²⁾ 주류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그 서방 후원국들이 대표하는 ‘민주주의’와 러시아의 푸틴 정권으로 표현되는 ‘권위주의’ 간의 쟁투로 묘사한다. 오늘날 세계는 미국이 이끄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과 중국·러시아가 이끄는 전체적인 지배 체제로 나뉜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국민방위전쟁인 것이다.³⁾ 최근(2023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급습하면서 10월 8일에 이스라엘은 제5차 이스라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240만 명 중에 많은 이들이 피난을 떠나면서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할 것 같다.

이에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전체적 체제를 지향하는 국

1)IDMC, “2023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global-report/grid2023/>;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countries/ukraine>

2) Alex Callinicos, “The conflict in Ukraine is an imperialist proxy war”, Socialist Worker, 02 May 2022, <https://socialistworker.co.uk/alex-callinicos/the-conflict-in-ukraine-is-an-imperialist-proxy-war/>

3) 알렉스 캘리네코스, 로잘리, 김준효, 이원웅 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 2022), 97, 98, 199, 200, 213-215, 234, 235-237, 240; 제성훈 외 7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박상남,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중국·러시아 관계: ‘신냉전’과 ‘선택적 협력 시대’; 윤성욱 “EU와 세계질서의 변화: EU는 세계질서의 변화에서 중심에 설 수 있을까?”(서울: KCI, 2023), 1, 9, 96.

가의 대리전쟁이기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과 그 전쟁의 전개상황, 그로 인한 난민발생과 그 난민을 향한 선교적 과제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II.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원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배로 인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사는 올레그(Oleg, 879-912)에 의해 키이우 공국(Kievan Rus)을 키이우에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블라지미르 1세(Vladimir I, 980-1015)가 비잔틴 황제 바실리우스 2세(Basilus II)의 여동생 안나(Anna)와 결혼하면서 988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 동슬라브인이 정교회 교인이 되는 기초를 놓았다.⁴⁾ 1240년 키이우가 몽골에 멸망 받은 후 키이우 공국 서쪽은 리투아니아(Lithuania)가 지배하게 된다. 리투아니아의 요가일라(Yogaila: 1351-1434)가 1385년 폴란드 야드위가(Jadwiga) 여왕과 결혼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세례받고 폴란드 국왕을 겸하면서 리투아니아-폴란드 왕국(Polish-Lithuanian Commonwealth)이 되었다. 이 연합왕국은 루블린 조약(Union of Lublin, 1569)에 의해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루시인들은 동방정교회를 버리지 않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로마 가톨릭 진출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 말 이 지역에 로마 가톨릭에 예속되는 가톨릭과 정교회의 연합인 우니아트 교회(the Uniate church)를 공포하자 이 지역 정교회 농민들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가 코자크의 헤트만이다. 1553년에 우크라이나 드네프르 강 동남부 변경에서 자파로지에 자치구(Zaporozhian Sich)를 세워 코자크가 조직화되었다. 자체 선출된 지도자를 헤트만(Hetman)라고 하여 법과 군사를 통솔하며 중요한 결정은 의회(Rada)에서 했다.⁵⁾ 코자크 헤트만 흐멜리츠키(Hetman Bohdan Khmelytsky)가 폴란드 침입의 방어를 위해 1654년 1월 모스크바 공국과 페레야슬라브 조약(Treaty of Pereyaslav)을 맺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1686년 폴란드와 러시아가 ‘영원한 평화’(Eternal Peace) 협정을 맺어 드네프르 강 동쪽 키이우와 코자크 지역을 러시아가 드네프르 강 서쪽을 폴란드(1773년부터 오스트리아)가 통치하면서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까지 러시아가 337년간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19세기 재정 러시아 차르는 러시아인 우월주의를 내세웠고 제국 내 우크라이

4) Anna Reid. Borderland. A Journey through the history of Ukraine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9.

5) Anna Reid. Borderland. 30-54.

나인은 문명화가 덜 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억압하였다. 특히 1870~1905년까지, 1914~1917년까지 우크라이나어 문학과 산문을 금지하였다.⁶⁾ 그리고 1932~1933년의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인위적인 것으로 소련 스탈린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봉쇄하고 주와 주 사이의 이동을 금지했고 저장해 둔 밀을 몰수하였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4분의 1이 죽었다.⁷⁾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0~195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의 다른 지역으로 추방된 우크라이나인은 571,000명이나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히틀러와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소련에 소속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인 약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⁸⁾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17세기 이후 1991년 독립할 때까지 러시아의 2등 국민으로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소련 독립 이후에도 소련 체제에서 많은 이득을 누렸던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정치발전을 방해해 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정치 권력의 핵심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유하고 막강한 거물들(올리가르히)이 되었고 일반 대중은 반대로 가난해졌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1993년 5,200만 명에서 오늘날 4,100만 명으로 줄 정도로 이주민자가 많아졌다.⁹⁾

한편,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와 전쟁을 벌이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시리아 독재정권을 지원하자 서방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온갖 악덕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¹⁰⁾ 푸틴은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를 넘어 소수 엘리트 관료, 군인, 독점 기업가 간 소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푸티니즘(Putinism)’¹¹⁾을 구축했다. 여기에 국민들의 지지에도 한몫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그의 국민적 지지율이 여전히 65%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일부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친러 꼭두각시 정권을 원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에 내주지 않을 최후의 국가이기도 했다.¹²⁾ 이는 2015년부터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을 주도하는 데서도 드러난다.¹³⁾

6)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효, 이원웅 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 2022), 113.

7) 이고르(Igor Tuveri), 『우크라이나 이야기』, 정소중 역(성남, 2015), 34, 35, 52.

8)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효, 이원웅 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 2022), 29, 58, 106, 107, 128, 129.

9) 알렉스 캘리니코스, 30-32; 상대적으로 폴란드는 1,731달러에서 15,721달러로 우크라이나와 비교가 된다.

10) 알렉스 캘리니코스, 33-36, 145, 192, 216; 독일 가스 수요의 절반, 프랑스 가스 수요의 4분의 1이 러시아 산 가스였다.

11) 월터 라퀴(Walter Laqueur), 『푸티니즘(Putinism: Russia and Its Future with the West)』, 김성균(서울: 바다출판사, 2017) 227~250.

12)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효, 이원웅 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 2022), 27, 77-80; 1990년대에 보리스 옐친은 나토에 가입을 원했으나 거절당했다. 푸틴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에 나토에 가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13) 한홍렬, 박정호, 윤성욱, 조혜경,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반면,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러시아의 예속에서 벗어나 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었다. 그중 하나가 2004년의 오렌지 혁명이다. 그러나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우크라이나도 경제 위기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2013년 말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외환의 보유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 대통령은 친러이면서 동남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러시아와 협정을 맺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야권과 우익, 반러, 친서방 세력들은 이 결정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완전히 러시아에 예속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2013년 11월 21일 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결국, 2014년 2월 18일 유로마이단 시위에서 102명이 죽고 1800명이 부상당하는 최대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¹⁴⁾ 이에 의회는 긴급히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그리고 개신교 집사인 국회의장인 알렉산드로 투르치노프를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친서방 과도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이것을 러시아는 “파시스트 쿠데타”라고 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흑해함대가 있는 크림반도¹⁵⁾를 강제 병합하였다. 또한, 러시아계 주민 비율이 높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분리·독립 시위가 발생했다. 이는 친러 반군 세력과의 내전으로 확산되어 결국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가 떨어져 나가 각각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때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인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가 대통령이 되었다.¹⁶⁾ 이렇게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진 돈바스 내전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다. 급기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에 3,725달러가 되고 2022년에는 3,000달러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35%가 빈곤선 이하가 되었다.¹⁷⁾ 이 8년 간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14,000명이 죽고 200만명 이상이 “국내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s)이 되었다. 2020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우크라이나로 통합하되 특별 자치 지역 지위를 부여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친러 올리가르히의 지지를 얻어 과거 조지아 패튼을 따라, 우크라이나 두 분리 독립지역을 러시아의 공화국으로 공식 인정한 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돈바스 두 공화국에 대대적으로 러시아 시민권을 주면서 그곳 러시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그리고 우크라이나

2014-12-30), 국문 요약.

14) Міністерство охорони здоров'я України, Прес-релізи, новини та оголошення, http://www.moz.gov.ua/ua/portal/pre_20140311_a.html, 2014.03.11

15) Anna Reid. Borderland. 175, 182.

16)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을 참조하십시오. 최하영, “우크라이나 내전과 난민, 그 과제” 『복음과 선교』 제33집 247-274.

17) 조다윗, 『우크라이나와 세계를 바라보며』 (서울: 비전출판사, 2022). 27, 28, 33.

와 벨라루스의 접경에 러시아군 14만 명을 전진 배치한 후에 2022년 2월 24일에 침략하였다.¹⁸⁾

Ⅲ.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전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2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여 친러 정부를 세운 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마리우폴 항구도시, 크림반도, 헤르손까지 동부와 남부 지역 등 우크라이나의 25% 이상을 빼앗고 싶었다. 그런데 그 전술 전략은 이틀 만에 무너졌다. 우크라이나가 놀랄 정도로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¹⁹⁾ 러시아는 3일 동안 3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의 중요 에너지시설과 군사시설을 파괴하였다. 그런데 60%의 오발로 어린이들과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의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2월 27일 18~60세 남성들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였고 3월 5일까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크라이나 남성 66,224명이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귀국하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들(아조우연대, 우파구역 등)이 들고일어났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민족의식은 더 강화되었고 영웅 이야기로 무장하였다.²⁰⁾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럽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NATO 30개 회원국 중 대부분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무기들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푸틴과 연계된 올리가르히를 겨냥한 러시아 은행들의 국제결제망(SWIFT)을 차단하였다. 2022년 3월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9·11테러가 세계를 변화시켰듯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세계를 각성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에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참석하였다. 미국은 아시아판 NATO인 QUAD에 일본, 호주, 인도와 연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²¹⁾ 한편, 러시아군이 침공 2개월 만에 후퇴했는데, 후퇴하면서 곳곳에 민간인들을 집단학살(genocide)하고 성범죄를 일으켰다. 이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범” 딱지를 붙였다. 2023년 2월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141개국이 찬성했다. 반대한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북한이다. 한편, 중국과 쿠바,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35개국이 기권

18)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 2022), 44-46, 47, 120.

19) 최하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선교적 과제”, 『기독교사상』 2022년 4월호 78~86 참조하시오.

20)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 2022), 129, 211.

21) 제성훈 외 7명, 조형진, “중국과 세계질서의 변화: 중국몽과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실현”, 82~85.

했다.²²⁾ 대한민국은 2022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에 “헬멧, 방탄조끼, 모포, 군화 등 비살상 군용물자”를 지원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산수출특수를 얻으면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등에 판매하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한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2016~2020년 세계 9위(2.7%)라고 했는데,²³⁾ 2023년 현재는 세계군사력 5위라고 한다.

IV.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 상황과 전망(결론)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그 영향을 받은 자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즉 그들의 재산상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과 주거시설, 고용의 기회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를 위한 법적이고 행정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종결이 우선이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고 난민이 되는 '살아있는 지옥'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들 난민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은 걸린다고 하였다.²⁴⁾ 그러나 현장에서 겪는 필자 입장에서 보면 그 트라우마는 끝이 없는 것 같다.

2023년 10월 현재도 전쟁 중이다. 코르토노프(Andrey Kortunov)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이사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째, 러시아가 패배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여 단극체제가 부활하는 경우이다. 러시아를 길들이게 되고 글로벌 자유주의 패권이 확립되고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타협을 한다면 UN의 개혁과 국제법의 현대화, IMF와 WTO 등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다면, 현대 국제체제의 붕괴를 촉매할 것이다. 군비경쟁은 가속화되고 핵무기 확산의 일어나고 지역분쟁이 증가하고 국제 테러가 만연할 것이다.²⁵⁾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난민은 현재 지구상

22) 알렉스 켈리니코스, 160, 161, 168, 169, 176, 177, 212, 285, 289.

23) 알렉스 켈리니코스, 299, 301, 303, 304.

24) Русская Правда, «Беженцы с Украины имеют проблемы с интеграцией в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http://ruspravda.info/Bezhenetsi-s-Ukraini-imeyut-problemi-s-integratsiey-v-rossiyskoe-obshchestvo-14466.html>, 2015.8.19

25) 제성훈 외 7명, 공민석, “미국과 세계질서의 변화: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55-56.

에서 최대이다. 이들 난민을 위한 선교는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알고 모든 제도적·사회적·문화적·물질적·인적·영적 노력을 포함하는 총체적 (holistic)대책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이런 고난을 만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국교회는 이들을 찾아가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로 2021년 기준 1억 톤이나 된다.²⁶⁾ 이는 한국의 약 13배 양이다.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후퇴하면서 지뢰를 뿌려 놓았다. 또 흑해를 점령하고 오데사 항구를 드론으로 꾸준히 포격하고 있다. 그래서 곡물을 지배하거나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겨 이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 살던 저개발 국가에 큰 고통을 주고 있다.²⁷⁾ 이들 국가의 경제난민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연세 많은 분들은 어디를 가지도 못한다. 많은 어린이들은 엄마 따라 이웃 국가로 이동했지만, 다른 환경과 다른 언어, 문화로 어려워한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도 전쟁 중인데도 무리해서라도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고 있다. 유럽에 나간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여성이 86%이고 그들 중 60%가 대졸자로 엘리트들이 많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졌던 고급 일자리 보다 허드레 일로 연명하고 있다.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인들도 가끔 있는 단전과 단수, 수시로 있는 사이렌 소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두려움도 없어졌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심정으로 일상으로 살고 있다.

이런 중에도 우크라이나내 개신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고 있다. 구호품을 교회로 통해서 나눠줘서 오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 우크라이나 개신교의 젊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유럽을 일으키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에 한국교회가 참으로 할일이 많아졌다. 이제 한국은 군사대국으로 소문도 났다. 그리고 전쟁 후 복구에 한국의 기업과 NGO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교회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전쟁의 참상을 겪는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세워 선교 한국처럼 선교 우크라이나로 만들길 기도해 본다.

참고문헌

알렉스 캘리니코스, 로잘리, 김준호, 이원웅 외, 『우크라이나 전쟁』 서울: 2022.

이고르(Igor Tuveri), 『우크라이나 이야기』, 정소중 역, 성남, 2015.

제성훈 외 7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서울: KCI, 2023

26) 허승철,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과 전략적 함의”, 2022. 1. 18. IIRI Online Series No. 98.

27) 제성훈 외 7명, 윤성욱, “EU와 세계질서의 변화: EU는 세계질서의 변화에서 중심에 설 수 있을까?”, 110.

- 조다윗, 『우크라이나와 세계를 바라보며』, 서울: 비전출판사, 2022.
- 최하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선교적 과제”, 『기독교사상』 2022년 4월호 78~86.
- 최하영, “우크라이나 내전과 난민, 그 과제” 『복음과 선교』 제33집, 247-274.
- 최하영, “정교회신앙에 뿌리를 둔 우크라이나 교회의 역사와 선교적 과제”, 『역사신학논총』 제25집, 서울: 생명말씀사, 2013.
- 최하영, 『실크로드를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 년의 교회 역사』, 서울: 학술정보, 2007.
- 한홍렬, 박정호, 윤성욱, 조혜경,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허승철,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과 전략적 함의”, 2022. 1. 18. IIRI Online Series No. 98.
- Anna Reid, *Borderland. A Journey through the history of Ukraine*,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 Alex Callinicos, “The conflict in Ukraine is an imperialist proxy war”, *Socialist Worker*, 02 May 2022,
<https://socialistworker.co.uk/alex-callinicos/the-conflict-in-ukraine-is-an-imperialist-proxy-war/>
- IDMC, “2023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global-report/grid2023/>;
<https://www.internal-displacement.org/countries/ukraine>
- Русская Правда, 《Беженцы с Украины имеют проблемы с интеграцией в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http://ruspravda.info/Bezheritsi-s-Ukraini-imeyut-problemi-s-integratsiey-v-rossiyskoe-obshchestvo-14466.html>
- Міністерство охорони здоров'я України, Прес-релізи, новини та оголошення,
http://www.moz.gov.ua/ua/portal/pre_20140311_a.html, 2014.03.11

국내체류 아랍난민·이주민을 위한 실천사역 소고:

요르단에서 아랍난민 사역경험 중심으로

송 유세프*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거나, 이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글이다. 유럽 교회들의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유럽 침례교 연맹의 자문위원이며, 레바논과 시리아의 침례교 구호 대응 설립자인 루펜 다스(Rupen DAS)에 의하면, 난민과 이주자들은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정체성을 잃고 인간의 존엄성에 타격을 받은 타자(他者)와 약자(弱者)로 이해한다.²⁸⁾ 그는 난민과 이주민 사역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인류가 에덴 동안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두고, 신학적 근거로는 크로아티아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가 말한 배제와 포용신학 관점에 둔다.²⁹⁾ 연구자는 난민과 이주민 사역에 대한 다스(Rupen Das)의 성서적, 신학적 입장에 동의한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은 구체적인 봉사활동 안에서 정체성을 잃고 자존감이 짓밟히고 배제된 타자이며 약자로 사는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한 연구자의 사역경험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국내의 아랍인 사역팀에게 위로와 용기로 도전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97개 나라로부터 총 2,245,912명이다. 그중 아랍연맹(Arab League)³⁰⁾에 속한 아랍국가 22개국에서 온 체류자 수는 총 국내 체류 외국인대비 약 0.6%인 13,497명이다. 그중 성별로 남성이 9,027명 여성은 4,470명으로 각각 남성이 66.88% 여성이 33.12%로 나타났다. 아랍 문화 배경에서 남성이 대부분 많이 나타나지만, 여성이 더 많이 체류하는 나라로

* 송 유세프는 1999년 중동지역으로 파송 받았다. 현재는 카이로 시내에 있는 이집트 복음주의교회, 남수단 난민교회 그리고 성시므온 콥트정교회 교육센터에서 봉사를 수행하는 중이다.

28) Rupen DAS, "God and Refugees: Foundations for Hope : The Church Responding to Muslim Refugees," 하나님 & 난민들 : 무슬림 난민에 대한 교회의 선교 신학적 반응,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9, No. 1, 2016, 03, 29-51.

29) 위의 글.

30) https://en.wikipedia.org/wiki/Arab_League, 2023-9-21, 9:49 am 접속함. 아랍연맹이란 이집트, 카이로에 본부를 둔 정치적인 기구로 1945년 아랍 6개국으로 시작하여 2023년 현재 22개국 회원국이다. 아랍연맹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통합을 돕고,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조직이다.

모로코,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5개국이다.³¹⁾ 이것은 한국교회에 아랍인 사역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아랍인 사역하는 동안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도 예상된다. 그 이유 중에는 아랍인의 세계관과 종교와 문화(이것들에 관해서는 본 연구 범위 밖이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올 것이다.³²⁾ 이럴 때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난감해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것 가운데 특별히 재정과 관련되어 있다. 도움이 태산만큼 많은 난민과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팀에게 재정은 큰 부담으로 온다.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질문들이 예상된다.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하나? 재정은 얼마까지 도와주어야 할까?’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실제 이슈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오히려 미궁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연구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극복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쉽지 않은 실제적인 문제의 해법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풀어진다는 연구자의 가설이다. 많은 재정적 자원이 필요한 사역이기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만큼 버거운 일이다. 사역은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그럴듯한 믿음(?) 혹은 인식은 아무런 효용이 없을 때가 온다.

연구자는 시리아 난민사역에서 자원의 한계 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³³⁾의 한계에도 난민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육체노동으로 집수리, 페인트칠, 필터링한 생수통 배달하기 등에도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함이 솟아오르고 행복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다. 연구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은 아랍인도 사랑하신다”³⁴⁾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다. 루이스 하마다(Louis Bahjat Hamada, 1928-2019)의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난민사역 하도록 했다. 이것이 아랍인 사역 플랫폼이요 해법이다.

31)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내_외국인_현황, 2023-9-20, 7:32 pm 접속함.

32) 아랍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 번역서로 비교적 상세하게 아랍인을 전문가의 통찰로 인류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아랍인의 세계관에서 오는 문화와 태도와 행동까지 다룬 좋은 책이다. Sania Hamady, *Temperament and Character of the Arabs*, 손영호 역, 『아랍인의 의식구조: 아랍, 아랍인 바로 알기』, 서울: 도서출판 큰산, 2000.

33) <https://ko.wiktionary.org/wiki/> 2023-09-21, 10:39 pm 접속함. 나무위키 사전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밑이 깨어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쓸데없는 일에 헛된 노력을 한다는 뜻이다.

34) Louis Bahjat Hamada, *God Loves the Arabs, too*, Jackson, TN: Hamada Evangelistic Outreach, Inc., 1994.

II. 하나님은 아랍인도 사랑하신다

A. 아랍인에 대한 관점을 뒤집으라

하마다는 아랍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이슬람 시아파의 아류에 속한 이단 종파로 취급받는 드루즈파(Druze)³⁵⁾에서 성장했다. 1954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공부하던 중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미국인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 후 성경을 읽고, 신학교육을 받으며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역단체 설립자로서 아랍 무슬림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 기독교계와 신학계에서조차도 홀대받고 있는 아랍인에 관하여 꾸준한 연구로 “하나님은 아랍인도 사랑하신다”라는 책을 1994년에 출판했다. 그의 책 제목은 자신 속에 있는 의분(義憤)의 외침을 백인들 주류 속에 던진 것일까! 하마다는 성경 인물 가운데 아랍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전부 조사하여 하나님의 아랍인 사랑을 입증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시작으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강림을 경험한 아라비아인까지 모두 열거한다.³⁶⁾

하마다의 논증을 통해, 연구자는 아랍인에 대하여 코페르니쿠스적 관점 전환이 왔다. 아랍인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아랍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연구자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었다.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왔다. 하마다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란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신학으로 인식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자의 실제적인 변화였다. 이것은 뉴비긴(Lesslie Newbigin, 1909-1998)의 주장이기도 하다.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WCC 가나 총회에서 나온 이 주장은 충분히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거나 고안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창조의 핵심인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아버지께 대한 아들의 신실한 순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³⁷⁾

35) 위의 책에서 하마다 박사가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을 논한 부분에서 이슬람의 이단으로 취급받는 드루즈파(Druze)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6) 위의 책, 85-108 참조.

37) Lesslie Newbigin, *Trinitarian Doctrine for Today's Mission*, 최형근 역, 『레슬리 뉴비긴의 삼위일체적 선교』,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15, 340-41. 이 외에도 삼위일체적 시각으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도록 요청하는 책으로 Christopher J.H. Wright, *The Mission of God*, 정옥배·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0과 그의 또 다른 책 *The Mission of God's People*, 한화룡 역,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그리고 Scott W. Sunquis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이용원

뉴비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결과가 베드로와 함께한 교회의 사역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결과로 본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려면 교회 편에서도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사실 고넬료와 그 집안이 회심한 결과, 교회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것은 교회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다. ...그 복음 전파는 주도권이 베드로의 수중에서 성령으로 넘어간 결과였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고백했을 뿐이다.³⁸⁾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 사역에 관심자 혹은 사역팀은 하마다의 책 『*God loves the Arabs, too*』로 아랍인에 대한 관점과 사역전환을 가질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아랍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하나님이 아랍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한다. 그 결과는 사역현장에서 무거운 짐이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혹시 탈진 상태일지라도 분연(奮然)히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B. 아랍인 사역 관점을 뒤집으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선교(missio Dei)를 직접 목격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의 선교(프로그램)가 중심이 되기 쉽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선교를 목격하는 경험은 “믿음에 큰 담력”³⁹⁾을 갖는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다.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 세우는 일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했다. 직분에 대한 신실한 자가 얻는 유익인 믿음의 큰 담력이다. 궁극적인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상급 받는 자의 유익함이 ‘큰 담력’이다. 절대 진리가 훼방 받아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음이 ‘유일한 진리’일 수 없다”라고 뉴비긴은 지

• 정승현 역, 『기독교 선교의 이해』,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21, 345-519 등이다.

38)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명룡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2007, 235-36.

39) 디모데 전서 3장 13절에서 “믿음의 담력”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적한다.⁴⁰⁾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자신감’이다.⁴¹⁾ 그것은 바울이 말한 “믿음의 큰 담력”과 상응한다.

하마다와 같은 아랍인 회심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 아랍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많다. 하마다의 책을 통해 아랍인 사역 관점이 바뀌고 인식변화는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회심자를 직접 목격하는 경험은 연구자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했다.⁴²⁾ 연구자의 아주 작은 믿음 위에 큰 담력이 부여졌다. 이런 일들이 국내의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 사역팀이 직접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아랍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목적은 큰 기쁨이다. 사역팀에게 아랍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믿음에 큰 담력으로 각종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전환점을 맞보게 한다. 아랍 난민과 이주민 사역팀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다.

III. ‘온 천하’ vs ‘한 영혼’ 게임

A. ‘온 천하’ 사역은 결과 중심이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온 천하’ 카드를 내밀었다. 유혹하는 자 마귀다운 승부수를 던졌다. 마귀는 ‘온 천하’가 주는 힘과 매력을 익히 안다. ‘온 천하’를 가진 자는 명예와 권력은 물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집중을 한 몸에 받는 인기연예인 같은 기분일 거다. 속이는 자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시도했을 정도이니 ‘온 천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상이 된다. ‘온 천하’는 인간에게 한없이 유혹감이다. ‘온 천하’를 소유한 자는 ‘온 천하’를 섬겨야 하는데(for serving the World), 오히려 더 소유하고 더 착취하여(to be served) 자신 외에 아무도 넘보는 자가 없을 때까지 간다. ‘온 천하’를 가졌다고 하는 자나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부끄러운 끝장을 뉴스 미디어에서 접한다.

해외사역자에게 또한 ‘온 천하’ 유혹이 많다. 자신의 사역이 제일 크고 많아야 한다. 서둘러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센터를 오픈하여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카메라 앵글로 쫓는다. 이 모습을 현지인들은 보기 좋게 ‘우리 때문에 당신이 돈이

40)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445.

41) 위의 책, 446.

42) 연구자의 직접경험은 아랍인 사역 4년 6개월 이후였다. 간접경험으로 아랍인 회심자 간증 책들이 유익한데, 마크 가브리엘의 『예수와 무함마드』, 나빌 쿠레쉬의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빌퀴스 쉬이크의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 타스 사다의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 에미르 캐너의 『값비싼 소명』 등이다.

생기니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며 당당하게 손을 내민다. ‘그 사역자에 그 현지인이다’란 격언이다. ‘온 천하’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떨쳐버리고⁴³⁾ ‘한 영혼’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연구자는 ‘한 영혼’ 사역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 보았다. 성경 기록만으로 보았을 때, 성경 인물들 가운데 거의 모든 인물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사역의 크기가 아주 작다는 것이다. 어떤 인물은 매우 귀중한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경에 한 줄도 그의 사역 기록이 없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 아버지를 떠올리어 보자. 그의 이름은 기록조차 없다. 그의 사역이 없어서도 아닐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암흑기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통치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심지어 선지자들조차 순교 당하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강력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 시기 엘리야를 순교신앙으로 양육했을 그를 목상했다(물론 성경에 그 기록은 없지만 말이다). 그는 엘리야를 낳고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혹은 ‘살아계신 여호와’란 의미가 있는 아들의 이름을 작명하였다. 바알과 아세라 외에는 신이 없으니 그들 만을 숭배하라고 했을 서슬퍼런 절대권력자 앞에서 ‘여호와’ 단어를 넣어 이름을 지었다.⁴⁴⁾ 과연 엘리야 아버지는 평생에 단 한 명의 제자훈련에 성공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와 엘리야 아버지를 목상했다.⁴⁵⁾ 어디 엘리야 아버지 한 사람뿐이겠는가! 무수히 많은 성경 인물들의 사역이 아주 작았다는 사실과 그 사역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목상했던 때를 생각하니 감사가 밀려온다. 아랍 난민과 아랍이 주민 사역팀이 그것을 목상하면서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 ‘한 영혼’ 사역의 핵심은 과정 중심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막 8:36-37 참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 16:24b 참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뒤따라 온 가르침이다. 온 천하와 자기 목숨, 자기 목숨과 온 천하를 비교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discipleship) 문맥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교적 삶이다. 그것은 온 천하를 얻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본문의 문맥과 아랍인 사역과 관련하여 ‘한 영혼’ 사역은 순교적 삶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논리적인 비약일까! 순교적 삶의 스펙트럼은 넓다. 평안한 시대부터 핍

43) 마 4:8-11을 보라. 마귀의 ‘온 천하’ 유혹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44) 열왕기상 17:29-34 참조.

45) 열왕기상 18-19장 참조.

박받는 시대에서 순교적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무쪼록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을 순교적 삶과 연관하여 묵상하는 것은 많은 유익함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온 천하’ 사역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한 영혼’ 집중하는 사역은 비성서적 가치와 세계관적 태도를 버리게 한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사역형태이다. 거기에는 카메라 앵글에 집중하지 않는다. 사역보고 꺼리를 찾아 기웃거리지 않는다. 사역비를 잘 받아낼 수 있는 권력 실세에 아부하지 않는다. 사역후원을 바라고 사역이 힘들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사역자 중에 제일 값싼 집에 산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성공담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감동 주려는 의도에서 능변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방문자들에게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비밀로 마련된 또 다른 집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문팀에게 하나님의 일(선교)하시는 것을 목격하도록 안내할 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안내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안내한다.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밭에 보냄 받아 기뻐하도록 안내할 뿐이다.

아랍가정에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주변에 아주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감동이 밀려온다. 그런 감동으로 인해 가슴이 터져 나갈듯한 경험을 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었다. 약 1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시리아 남부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에티하드(Etihad) 교회에서 사역팀은 거실에 둘러앉아 말키 이슈에(Malky Ichoue) 목사의 간증을 들었다.⁴⁶⁾ 약 30여 분 동안 막간의 쉽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지역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난 간증들이 쏟아졌다. 감동이 밀려왔다. 감동은 감동으로 뭉쳐져서 더 큰 감동으로 커져만 갔다. 마치 눈덩이가 점점 더 크게 뭉쳐져 아주 큰 눈사람을 만들어내듯 감동 덩어리는 절대 쪼그라들지 않았다. 가슴속 깊숙이 밀려온 감동은 맥박과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었다. 가슴을 조여 압박했다. 너무 조여드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양팔을 오므리고 뒤로 젖혀 가슴을 풀어주려고 했다. 감동에서 감동으로 밀려온 감동 덩어리는 더욱 부풀어 올라 가슴이 터질 듯했다. 부푼 가슴은 임계치에 도달했다. 기적에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교 간증을 더 들을 수 없었다. 손을 내밀며 간증 이야기를 만류했다. 말키 이슈에 목사님의 간증은 거기서 멈췄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기쁨 그 자체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요 16:22 참조) 기쁨이다. 하나님은 연구자에게 ‘한 영혼’을 위한 실제

46) 중동에서 전략적인 사역은 단기팀사역이라 확신하고 진행하던 기간에 장기사역자로 구성된 단기 사역팀이 방문한 교회이다.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것을 소개함으로 국내의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 사역팀이 용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IV. ‘한 영혼’ 사역실제: 환대 너머 삶으로 초대

난민발생 원인은 인간의 사악한 욕심이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인류 첫 난민이다.⁴⁷⁾ 난민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환대다. 하나님의 환대는 죄의 결과인 수치를 가죽옷으로 손수 만들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다. 하나님의 환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삶으로의 초대다(베후 1:4 참조). 이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 문화가 고도의 산업사회를 지나 선진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고유한 환대문화 형태가 바뀐 것 같다. 아니 아주 실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고급 호텔과 식당과 카페라는 공간에서 환대한다. 공간적으로 개인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자신의 삶에로의 초대를 대체시킨다. 예수님께 ‘와서 보라’고 믿는 자들이 만들어지는 기회 창출의 공간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제거되었다. 자신의 삶에로의 환대문화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이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회심한 로렌 위너(Lauren Winner)가 말한 교회의 환대에 관한 이야기는 유의미하다: “교회는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⁴⁸⁾ 그는 환대가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 근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결과로 하나님의 신적인 삶으로의 초대로 본 것이다.⁴⁹⁾ 그래서 위너는 환대행위가 단순한 다과와 식사 초대행위 너머 자신의 삶에로의 초대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⁵⁰⁾ 오늘의 한국문화는 너무나 변해서 개인의 생활공간으로 환대(초대)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공동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 사역팀만이라도 자신들의 개인 공간으로 환대해야 한다. 한국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아랍 문화에서는 환대와 자신들의 생활공간(집)으로의 초대가 아주 중요한 생활문화인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 사역팀들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⁵¹⁾

47) Rupen Das, 31 참조.

48) Lauren F. Winner, *Mudhouse Sabbath*, 양혜원 역, 『머드하우스 안식』, 서울: 도서출판 북 있는 사람, 2011, 62.

49) 위의 책, 64.

50) 위의 책, 65, 68.

51) 아랍인의 방문과 손님 대접과 음식에 관한 문화를 통해 아랍난민과 아랍이주민 사역자의 자세와

성경 전체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난민선교 내러티브로 이해할 수도 있다. 난민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환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 서사(메타내러티브)다.⁵²⁾ 난민과 이주민 사역은 선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다. 교회와 사역팀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말과 행동과 삶으로 동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⁵³⁾ 연구자는 요르단에서 한 지역교회의 난민센터에 센터장으로 초빙받아 사역했다. 센터는 교육과 직업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과부명부 작성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과부명부 작성 프로젝트는 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이후 비교적 늦게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한 영혼’ 집중사역 기회로 활용했다. 방문조사 활동은 현지직원과 함께 실시했다. 앞서 말한 대로 프로젝트는 첫째 환대로, 둘째 삶에로의 초대를 위한 것이었다.⁵⁴⁾

A. 환대사역

1) 과부 등록명부 만들기

신명기 14장 29절 전반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법이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부류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는 오늘날의 난민과 이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십일조는 성읍에서 저축하고 관리하라는 신명기법이다. 고아와 과부를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⁵⁵⁾

오늘날 구약성경 셈족의 문화가 잘 나타나는 공동체는 아랍 유목민(베두인)이다. 아랍인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로 동의한다.⁵⁶⁾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날 아랍인이다. 경험적으로 구약성경에서 셈족의 족장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랍 유목민들이다. 아랍 유목민 세계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랍 사회에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남성의 역할은 보호자, 공급자, 경찰(Protector, Provider, Police, 3P)로 설명한다. 보호자는 가족과 씨족을 보호하는 자, 양

태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부분이 많다. 이것에 대하여, Sania Hamady, 『아랍인의 의식구조: 아랍, 아랍인 바로 알기』, 79-85 참조.

52) Christopher J.H. Wright, *The Mission of God*, 정옥배·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0, 19-83 참조.

53) Christopher J.H.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한화룡 역,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11-30 참조.

54) Lauren F. Winner, *Mudhouse Sabbath*, 『머드하우스 안식』, 56-71 참조. 위너가 제시한 환대 개념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55) 『취리히 성경해설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신명기 14:28-29 해설 부분을 참조.

56) 아랍인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주장이지만, 그것은 성경과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것을 위해 웹사이트 참조는 <https://www.meforum.org/57936/ishmael-father-arabs>, 2023-9-21, 5:01 pm 접속함.

식을 공급하는 자와 침입해 오는 외부의 적과 싸워 승리하여 가족과 씨족과 부족을 지켜내는 경찰의 역할이 아버지 개념이다. 유목민 세계관은 아랍 도시에서 아내가 직장에서 생계를 위한 돈을 버는 것을 남편은 수치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남편 없는 과부들의 생계는 너무나 곤란하다. 구약시대에는 더욱 그러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 공동체가 책임을 갖게 하는 신명기법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아와 과부를 위한 미국의 한 후원단체로부터 과부명부를 만들라는 요청이 왔다. 아랍 난민들 가운데 내전 발생으로 정부군에 징집되어 사망한 남편, 군인 신분에서 전쟁 중에 사망한 남편, 내전 발생 이전 데모에 참여했다가 실종되었거나 끌려가 고문과 사망한 사례 등이 많았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부인만 남아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과부명부를 작성하는 등록 기간이었다. 방문조사는 과부 가장(家長)들의 실태를 자세하게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기회였다. 사연마다 안타까웠다. 방문조사는 가정의 난민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는 기회다. 기구한 가정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2) 가정방문과 실태조사

과부명부 기록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방문은 생활 환경, 자녀들 수, 수입원 조사, 친족들의 해외 거주 여부, 남편의 실종과 사망 여부 등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방문조사가 기간 실제적인 필요들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모두가 기구(崎嶇)한 사연과 인생의 운명이 이런 것인가! 함께 울어주는 시간이었다. 슬픔 그 자체였다.

조사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은 같은 민족을 향해 폭격할 수 없다고 항명한 어느 전투기 조종사가 실형으로 사형당해 이슬처럼 사라진 가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막을 걸어서 국경을 넘을 때 어린 자녀들이 시리아인 국경수비대의 총소리가 두려웠다. 어린 아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남편을 잃고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어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례는 눈물로 가슴을 적시게 했다.⁵⁷⁾ 이처럼 방문조사는 또 하나의 다른 실천적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준비로 활용했다.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3) 필요 채우기 실천하기

위의 “가정방문과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통해 실천적으로 봉사할 가정들을 파악했다. 의료 및 환경개선 프로젝트 파일에 올린다. 그것을 항목별로 적으면

57) 유엔난민기구의 중재를 통해 2020년 이후부터 유럽의 한 국가에서 정착해 살고 있다.

다음과 같다: 의약품 공급, 생필품 공급, 필터링한 생수 배달하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구수리와 페인트칠 등으로 봉사하는 일이다.⁵⁸⁾

외부인이 아랍가정의 생활공간을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아랍 여성이 사용하는 공간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집수리와 페인트칠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자에게는 허용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인간의 삶이 모두가 똑같다. 특별하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 아랍 여성들의 공간이라고 다른 것을 압니다. 봉사자들에게 한 번 허용됨으로 모두가 긴장감이 풀린다.

땀 흘리며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설탕이 듬뿍 넣어진 립톤(Lipton) 홍차와 터키식 커피가 나온다. 아랍의 점심은 오후 3~4시 정도의 늦은 오후다. 쌀 위에 닭고기와 감자, 토마토, 가지 등의 채소들을 넣고 기름을 약간 부어 삶아 낸 점심 메뉴로 나오는 마글루베를 먹으며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친족인 듯 착각할 정도로 마음이 열린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더 구체적인 가족의 상황이 들려진다. 이때는 히어링(hearing)에서 리스닝(listening) 단계로 나아가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가정을 위한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기도 제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으면 서로의 종교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종교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거의 모든 가정은 기도하라고 요청한다. 이것이 리스닝해야 할 포인트다. 이런 순간을 놓친다는 것은 봉사하는 의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다음 단계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 ‘거룩한 식탁’ : 삶에로의 초청사역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계 1:9b 참조) 듣고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계 1:1a 참조)에는 ‘거룩한 식탁’을 포함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탁이다(계 3:20 참조). 제자들은 이 궁극적인 식탁에 이미 초대받았다(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참조).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은 제자들은 새 언약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계 19:9 참조),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계 21:1-4 참조).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이 맛보는 궁극적 복이다. 거룩한 식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한 영혼’ 사역을 진행하였다. 과부명부에 등록된 사람들(환대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예수님의 잔치에 차려진 음식을 맛보는 자는 많지 않았다(눅 14:15-24 참조). 예수님의 잔치를 맛본자(눅 14:24b

58) 집수리와 페인트칠 봉사에 참여한 그룹 중에 예루살렘교회(채완병목사) 봉사팀, 중국인(박베드로선생) 청년팀, 몰도바기독교자유대학 청년팀, 암만 한인 청소년팀, 중동X국 한인학생팀, 군포 열방의 빛교회(이정훈목사) 청년팀, 아신대학교 학생팀, 필리핀교회 외 개인 다수가 있다.

참조) 소수의 무리가운데 한 예를 소개한다.

한 가정을 삶에로의 초대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 환대받는 자의 삶의 처소인 가정으로 찾아가는 심방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것은 과부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한 영혼’ 찾는 일에 다양한 역할로 참여한 협력 그룹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지면상으로 그것을 상세히 기술하지 못하고 간략하게나마 소개한다.

- 1) 한 외국인 싱글 자매의 지속적인 교류와 방문 역할
- 2) 생필품·의약품·의료진료·필터링한 생수통 배달의 역할
- 3) 집수리하는 역할
- 4) 홈스테이로 담당한 역할
- 5) 방문하여 식사하는 역할
- 6) 질문-대답의 변증법적 대화의 역할
- 7) 말씀 씨앗 뿌리는 역할
- 8) 여러 나라에서 기도 역할
- 9) 말씀 읽기 역할
- 10) 병원으로 라이딩하고 수술비 등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역할

위의 다양한 10가지 역할에 참여한 많은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발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같은 한 영혼이고 잃었다가 찾은 동생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는 날이다(눅 15:7, 32 참조). 한 영혼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눅 13:29 참조)한 날이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자라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동역자들을 통해 만들어내신 최상의 걸작품이라고 고백할 뿐이다(고전 3:5-9 참조).

V. 결론

지금까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진행된 사역을 나눔으로써 국내에 체류하는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 사역의 실체가 어떠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 영혼’ 사역의 실재를 환대와 삶에로의 초대 즉,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에로의 초대임을 고찰하였다. 한 영혼이 그 거룩한 식탁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는 역할이 아랍 난민과 이주민 사역팀의 실천적 사역이라고 고찰하였다. 우

리의 육체로 헌신이 드러지고, 시간이 드러지고, 재정적 자원이 드러진다. 그리고 여러 기능을 가진 개인이나 팀의 협력사역이 함께 드러진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셔서 썩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로 나오도록 친히 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께 드러진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의 동참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해한 선교 활동의 진정한 이해다.⁵⁹⁾ 이 원리를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만 했다. 아랍 난민과 아랍 이주민 사역팀에게도 적용할 교훈이다.

참고문헌

-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Hamada, Louis Bahjat. *God Loves the Arabs, too*, Jackson, TN: Hamada Evangelistic Outreach, Inc., 1994.
- Hamady, Sania. *Temperament and Character of the Arabs*, 손영호 역, 『아랍인의 의식구조: 아랍, 아랍인 바로 알기』, 서울: 도서출판 큰산, 2000.
-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2007.
- _____. *Trinitarian Doctrine for Today's Mission*, 최형근 역, 『레슬리 뉴비긴의 삼위일체적 선교』,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15.
- Stott, John and Christopher J.H. Wrigh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희 역, 『선교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18.
- Sunquist, Scot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이용원·정승현 역, 『기독교 선교의 이해』,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2021.
- Winner, Lauren F. *Mudhouse Sabbath*, 양혜원 역, 『머드하우스 안식』,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1.
- Wright, Christopher J.H. *The Mission of God*, 정옥배·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0.
- _____. *The Mission of God's People*, 한화룡 역,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연구논문

- Das, Rupen. *God and Refugees: Foundations for Hope : The Church Responding to Muslim Refugees*, “하나님 & 난민들: 희망의 근거: 무슬림난민에 대한 교회의 선교 신학적 반

59) 고린도전서 3:5-9 참조.

응,” *햇불신학대학원대학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2013.03 Vol 9, No.1, 29-51.

김봉구. “이주외국인들과 함께한 다문화 목회의 길,” *「기독교사상」*, 2019.7, 46-54.

김성욱. “다문화이주민사역을 위한 평신도전문인선교,” *「신학지남」* 2018.12 제85권 제4집 (통권 제337호), 125-154.

김성진. “성경적 난민 이해: '떠남'과 '흠여짐'의 신학적 의미와 역할을 중심으로,” *「난민과 선교」*, 2022 창간호, 107-128.

문창선.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주안대학원대학교, 「미션인사이트」*, 2016 제7권, 51-74.

안석열. “한국 내 거주 중동과 북아프리카 무슬림을 위한 교회개혁 제 요인,” *중동아프리카 연구소, 「아랍과 이슬람 세계」* 2020.12 제7집, 147-197.

이수정 외 2인. “MENA 지역 유출 이주민 유형 분석과 적용,”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아랍어와 아랍문학」* 2020. 제24권 제3호, 135-159.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2007 제52권, 제2호(통권 제108호), 311-338.

이호택. “다가온 난민의 시대와 국내 난민 선교,” *「난민과 선교」*, 2023 2호, 100-131.

장훈태. “세계 난민 문제와 선교,” *「난민과 선교」*, 2022 창간호, 15-55.

정은배. “이슬람 공동체'움마'와 기독교 공동체'교회'의 정체성 연구,”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복음과 선교」* 2018. 1, 41(1), 233-286.

웹사이트

나무위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https://ko.wiktionary.org/wiki/> 2023-09-21, 10:39pm 접속함.

위키피디아, “국내체류 외국인,”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내_외국인_현황, 2023-9-20, 7:32pm 접속함.

위키피디아, “아랍연맹,” https://en.wikipedia.org/wiki/Arab_League, 2023-9-21, 9:49am 접속함.

중동포럼, <https://www.meforum.org/57936/ishmael-father-arabs>, 2023-9-21, 5:01pm 접속함.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이 아니다,”

중동 아랍여성 무슬림 난민 회심을 통한 정착 사례

최진리⁶⁰⁾

1. 들어가며

지구촌 곳곳의 난민 발생과 그에 따른 수적 증가는 최근에 일어난 글로벌 이슈만은 아니다. 지난 72년 동안(1951년 난민협약 기준) 천천히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분쟁과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난민 발생은 반복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월 듀랜트는 본인의 저서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이며 7.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은 ‘난민(refugees)’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박해의 공포로 인해 고국이나 출신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중동 아랍국가 요르단에서 2013년부터 거주 사역자로 사역하며 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정교일치의 이슬람 국가이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세속화된 무슬림이 확산하고 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종교 교육의 부족으로 종교 전통적인 문화 허점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무슬림들의 비율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

2. 도시 난민의 복음화

중동 아랍 국인 요르단은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시리아 난민 뿐만 아니라 이미 1948년, 1967년, 1973년 세 차례 아랍권-이스라엘 간 전쟁 시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250만 명이 요르단에 정착하였다. 이라크 난민은 1991년과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14년 이라크 내 IS의 발생으로 요르단에 유입된 난민의 수가 60만이 넘는다. 이렇듯 많은 형태의 난민들은 장기 거주 이유뿐만 아니라 최종 정착 국가로 가기 위한 중간 경유 국가로 요르단으로 피난했다. 요르단에 유입된 초기 팔레스타인 난민이나 이라크 난민들의 발생했을 때 중동 아랍 국가에

60) 중동 요르단에서 시리아난민 여성을 위한 말씀과 교회사역 한다.

서 난민에 대한 개입과 대처는 미국, 영국 등을 통해 국가와 유엔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1948년 67년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 중에 대부분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난민 생활이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이러한 중동 난민의 정착 사례는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자 전쟁이 종식되면 빨리 시리아로 돌아갈 생각에 많은 난민들은 가까운 요르단으로 일시 피난해 왔다.

3. 사막에서 도시로

시리아 난민중에 해외로 이민을 떠난 난민 이외에 종교와 언어가 다른 서방의 최종 정착지로 가는 것이 두려워 요르단에 정착한 난민들도 있다. 요르단은 사막에 있는 난민 캠프촌에 거주하는 난민과 도시로 이주한 도시 난민의 두가지 형태이다. 사막안의 난민촌의 삶은 규모가 큰 감옥과 같은 형태이다. UN 소속과 요르단 정부 담당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고 캠프촌에 거주하는 난민들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고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난민촌 인접 지역으로 이주한 도시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도시 난민들은 요르단내 각 도시로 노동을 위해 이주한다. 도시 난민은 UN의 최소한의 난민 쿠폰(월 1인 15\$)을 받는 혜택 외에는 자립해야 한다.

시리아 난민이 발생되자 세상의 많은 교회와 NGO 및 UN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을 집중했다. 국가설립 문제와 정치적 이념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 이라크 난민 때와는 달랐다. 이 관심은 한국교회들과 NGO 들도 시리아 난민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두고 돕기 시작한다. 그 도움의 손길들은 요르단이나 레바논 그리고 터키로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전해진다. 필자가 만난 도시난민 D자매는 시리아 내전으로 갑자기 포탄이 집으로 떨어져서 온 가족이 요르단 난민촌으로 옮겨졌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여 의족을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몇 년 동안 D자매는 기도와 예배로 양육되어 믿음이 성장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피해 성경책을 싱크대 위에 숨기면서 말씀 읽기를 사모하였다. 주변 난민을 전도하고 핍박하는 남편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하는 담대한 회심자 난민 여성이다.

4. 요르단의 무슬림 난민 여성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아랍 요르단은 아랍연맹 22개국에 속해 있으며 정치, 종교적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정교일치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은 같은 종교 안에서 충분히 서로를 보호받는 형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슬림 내에서도 전쟁과 재난으로 난민 신분이 되었을 때는 서로를 보호하는 종교적 형평성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가난한 무슬림 난민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 실제의 생활은 절망적일 수 있다. 또한 무슬림 난민들의 자국내의 거주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정교일치를 통한 종교적 당위성과 가치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특히 난민을 보호하지 않는 현실속의 무슬림 난민 여성들은 소망을 갖기 힘들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무슬림들이 늘어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인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많은 무슬림 난민 여성들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다. 무슬림 난민 여성이 난민의 신분으로 보편적인 이슬람의 종교와 문화 안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 이러한 고된 난민의 삶은 이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능과 여성의 모성애를 발휘하면서 난민 여성들의 삶이 변화되고 관습과 편견이 깨진다. 누구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난민 무슬림 여성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지하 교회들이 생겨난다. 필자가 만난 시리아 난민 여성중에 N자매는 요르단 인근 컨테이너집에서 살며 밤마다 구걸을 하며 장애아를 돌보며 사는 여성이다. 이 N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N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N자매를 꿈에서 만나 주셨다. 무슬림 여성 난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종하여 전인격적으로 삶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

5. 도시 난민 속의 무슬림 난민 여성과 다음 세대

전쟁을 통해 발생된 시리아 무슬림 여성 난민들에게는 사랑의 구제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방법이 효과적이다. 분명한 것은 무슬림 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직접적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대상중에 하나는 난민 2세대들이다. 어린 나이에 난민이 되어 성장한 난민 2세대이거나 경유국가에서 태어난 난민 2세대이다. 이 난민 2세대는 정규적인 이슬람 교육, 즉 종교 수업과 국어(아랍어 수업: 꾸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알아가는

문화적 무슬림으로 자라난다. 전쟁과 죽음, 가난을 경험하고 자란 난민 2세대들은 이슬람 종교성이 강하지 않게 자라나게 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회심자 어머니 난민 여성들의 해야 할 사명이기에 필자는 회심자 여성의 양육과 더불어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 부분도 강조하며 양육하고 있다.

6. H 자매 이야기

필자는 개종한 난민 여성 중에 H 자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매는 2012년 시리아 내전으로 가족들과 함께 요르단으로 피난을 왔다. 자매가 18세 되는 해에 한국에서 온 단기 의료팀을 통해 필자와 만나게 되었다. 자매는 단기팀으로부터 사랑의 섬김으로 인격적으로 평등한 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필자는 H 자매와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깊은 관계 갖고 삶을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 갔다. 자매는 필자가 선물한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받아들였다. 어릴 적 크리스천 배경의 친구가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인식의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동일한 난민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H자매와 같이 어린 시절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은 인식은 복음전도와 회심의 가능성을 더욱 더 극대화 시킨다. 믿음이 성장하고 양육되면 라마단 기간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하며 개종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자매는 매일 성경 필사를 하고 일대일 제자 양육 교제를 통한 성경 공부와 주 1회 4시간씩 성경 통독을 하며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양육된다. 성장은 외부적 행동으로도 나타나는데 무슬림 여성의 제한된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이기고 집세를 벌기 위해 힘든 청소일을 하며 자립, 자치, 자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자매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삶의 기쁨을 찾게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진영으로 이민을 가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H 자매와 같이 회심한 여성 모임은 요르단에 ‘지하교회’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7. 마치며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필자가 2021년 독일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 여성 P자매는 독일의 다른 언어와, 문화, 포비아현상에 힘들어 했다. P 자매는 필자에게 그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듯 놀이터에서 함께 신발을 벗고 뛰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였다. 이렇듯 개종하지 않은 무슬림 난민은 이주하여 유럽에 왔지만 과거 이슬람 움마 공동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해온 유럽의 국가 안에서 이슬람화를 확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최종 정착국가에서 신실한 교회나 기독교인과 접촉이 되는 확률이 낮다는 점이 난민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아랍어를 잘 할 줄 모르는 이슬람 종교성이 낮은 난민 2세대들이 생겨 이들이 세속화로 빠지기 전에 더 많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 최종 정착국이 어디이든지 그 정착지로 가기 전에 이미 이슬람에 대한 많은 회의와 실망,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난민들에게 복음이 확장돼야 한다. 경유지 국가에서 난민으로 사는 다음 세대나 최종 정착 국가에서 사는 난민 세대들은 정통 이슬람 국가에서 자란 세대들과는 문화적, 가치관적 세계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개종을 통한 향후 자녀세대 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것이 난민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각으로 보면 무슬림 난민 여성들의 구원의 가치는 개인 구원의 가치를 넘어 무슬림 난민의 총체적 구원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권리와 언약 기반의 난민선교 접근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호택⁶¹⁾

1. 땅의 권리와 하늘의 언약

(1) 인권기반접근이란 난민선교를 포함한 모든 개발협력, 정책, 지원 프로그램들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규범이 지시하는 인권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지침이며, 난민을 포함한 권리주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책임이 있는 선교사를 포함한 개인과 기관의 능력과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2) 이 글은 권리기반 난민선교전략을 Convention Refugee, Mandate Refugee, Climate Refugee와 관련하여 모색하고, 권리의 근원인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난민선교 전략을 Covenant Refugee의 개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난민의 권리와 법제도

가. Convention Refugee (협약난민)

(1) 1951.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난민 및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조A 2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합리적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또는, 상주국 밖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의 정의에는 전쟁난민이나 경제난민, 기후환

61) 국제난민지원기독교NGO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아신대학교 목회학석사(M.Div.)졸업, hotaeg@gmail.com

경난민 등이 제외되고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라는 5가지가 열거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또한 중요한 점은 과거에 박해 때문에 본국을 떠나왔는가 여부가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미래에 박해당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박해 때문에 본국을 떠나왔더라도 박해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고, 유학생이나 근로자 또는 외교관 등으로 박해없이 왔더라도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본국에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본인이 개종하는 등의 사유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우려가 생긴 경우 체재중 난민(Refugees sur place)이 된다.

(4) 각국이 정한 난민인정절차(한국은 2013.7.1. 발효된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난민신청 또는 비호(Asylum)신청이라 한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비호신청을 국가의 출입국관리부서에 하게 되며 비호신청자에 대하여 강제송환금지와 함께 임시적인 체류나 취업, 생계 등 일정한 권리가 부여된다.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비호신청을 UNHCR에 한다.

(5) 비록 각국이 난민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협약난민은 절차에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관계없이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는 순간 난민이 되는 것이며, 난민인정절차는 단지 난민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면 이는 위법이 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탈북난민을 강제복송 사례)

(6) 협약난민의 권리 : 가장 중요한 난민의 권리는 난민협약 제33조(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이지만 아직 절차적으로 난민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도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실질적 난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가 진행중인 비호신청인에 대하여도 난민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강제송환이 금지된다(난민법 제3조). 또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관습법으로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

다.

나. Mandate Refugee (위임난민)

(1) UNHCR이 UN으로부터 위임받은 난민보호의 책무에 따라 정의하는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은 협약난민 뿐 아니라, 일반화된 폭력사태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 신체의 완전함이나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위협 때문에 출신국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2) 위임난민과 Resettlement Refugee(재정착난민)

위임난민은 체류나 취업 등 난민보호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UNHCR이 운영하는 난민촌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3국으로의 재정착(Resettlement)이 필요하다.

다. Climate Refugee (기후난민)

(1) 기후변화로 온세상에 재난이 오면 아무도 보호를 요구할 수 없고 국가도 보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은 기후난민이나 환경난민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2)기후변화 뿐 아니라 사실 난민문제는 전쟁, 박해, 정치, 경제, 환경 등 그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결과와 해결이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해결은 하늘에 있다.

3. 난민의 시대와 선교언약

(1) 문명의 교차로에서 시작된 난민의 시대

역사학자 토인비는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는 길의 절반은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만나고 나머지 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에서 만난다”고 하였다.⁶²⁾ 시리아

62) Stephen Tanner, *Crossroad of Empires, Why Afghanistan is so often at the center of history*, May 13, 2009 : <https://www.nationalreview.com/2009/05/crossroad-empires-stephen-tanner>

의 알레포(아랍권)와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페르시아권)에서 이 시대를 난민의 시대로 특징지우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2)선교완성으로 가는 난민의 시대와 하나님의 선교

4. 권리 기반의 오병이어 난민선교 전략:

난민심사절차, 주거, 취업, 건강과 교육

5. Covenant Refugee(언약난민)의 선교사명

창 17:4; 신 8:2-4; 히 12:26-27; 사 66:18-21; 마24:6-7, 14

요한복음 읽기를 통한 무슬림 난민전도 실천적 사례:

국내체류 이주민·난민 사역 적용을 위한

최요셉⁶³⁾

I. 들어가며

이 글은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년간의 요르단의 무슬림 난민 전도 사역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필자는 2013년부터 요르단에서 ‘이중사역’의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사역’이라 함은 무슬림 전도와 함께 요르단에 남겨진 현지 구교 크리스천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랍선교사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필자는 무슬림 난민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국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글은 무슬림 난민 전도 중에서도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요르단으로 피난 온 시리아 난민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선교학적으로 무슬림 선교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은 AD 975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많은 부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이다.⁶⁴⁾ 그 당시 무슬림 통치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부족이 개종했다고 한다.

현재 요르단에 거주하는 회심자 시리아 난민들 또한 같은 종교의 무슬림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요르단은 무슬림 난민을 선교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겠다. 요르단은 이동하는 난민의 최종 정착지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서방 세계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무슬림 즉,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기를 희망하는 난민들이 요르단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요르단 정부 또한 경제적 정치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가 상황 때문에 공식적으로 25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요르단 내의 시리아 난민이 국가 통제의 난민촌에 있기보다는 도시의 빈곤층으로 흡수되고 있다. 특히 도시 난민은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사회의 하부층으로 들어가면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요르단에서 2016년부터 시작된 추수의 열매는 상당하다. 그것은 난민사태가 발생하고 초반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집중적으로 도우며 복음을 전한 결과이다. 이러한

63) 발제자는 GMI은혜한인교회 파송, FOT선교회 아랍디렉터, 서울영락교회 네트워크선교사.

64) 루벤 다스 (2016), 하나님 & 난민들: 희망의 근거. 무슬림-크리스찬 인카운터 9(1), 29-51.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시리아 난민과 함께 요르단으로 난민처럼 내려온 시리아 선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시리아 사태에 대해 전 세계 교회에 소식을 알리었고 이에 전 세계 교회는 기도와 관심으로 선교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기도와 물질로 함께 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결실 흐름 가운데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무슬림 난민 회심자가 영접 이후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필자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개종자들에게는 기독교 양육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II. 요한복음을 통한 무슬림 전도의 시작

복음을 전하는 첫 단계부터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렇게 된다면 전도대상자가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도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회심자가 성경을 읽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자라면서 또 다른 무슬림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필자가 요한복음 읽기를 통해 전도했던 대상자들은 2013년부터 요르단으로 피난 온 시리아 난민이며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여 사역하였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읽기와 함께 성경 쓰기를 함께 진행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남성의 사례만 다루고자 한다. 성경 읽기 전도대상자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사역자와 유지하고 있는 전도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역하였다. 전도의 최종목적은 ‘교회개척’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 형태보다는 가정 단위의 ‘지하교회’의 개념이다. 많은 무슬림 난민 중에서도 요한복음 성경 읽기 전도는 전도대상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했다. 성경 읽기 전도대상자의 접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첫번째로 요르단 지역을 정탐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지역이나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나지는 지역에서 성경 읽기 전도대상자를 찾았다. 초기 정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정한 지역을 2시간 정도 탐방하며 전도대상자를 찾으며 전도대상자 선정했는데 대상자가 정해지면 일주일에 몇 번씩 교제와 돌봄의 관계를 갖는다. 특히 관계의 형성 부분에는 SNS(왓츠앱)를 자주 사용하였다. 필자는 성경 읽기 전도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도대상자는 1) SNS(왓츠앱)를 잘 사용하며 연락이나 소통이 매우 원활한 자. 2)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는 자로 삼는다. 실제로 가정을 방문해야

만 대상자나 거주 가족의 종교성의 정도를 알 수 있고, 향후 복음의 거부 저항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3) 3개월 정도의 교제 기간에 사역자에게 마음을 열며 서로의 비밀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는 자다. 이것은 영접 전이라도 전도대상자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위와 같은 조건이 전도대상자와 형성이 되면 성경 읽기 전도가 가능해진다. 물론 위의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한 가능해지지만, 요한복음 성경 읽기로 전도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이 전도대상자가 영접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필자는 다시 한번 밝혀 두고 싶다.

III. 왜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은 기록된 그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요한복음은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의 ‘전도’라는 점이 매우 뚜렷하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요한의 선포이며 복음전파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무슬림 난민과 요한복음을 함께 읽었을 때 사역자가 알지 못하는 전도대상자의 영적인 부분 또한 하나님이 만지신다고 필자는 개인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읽기는 무슬림 전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을 함께 읽는 아랍어 버전은 ‘아랍어 쉬운 성경(SAT) 버전’을 사용했다. 문어체(푸스하, Fushat) 아랍어를 요르단에 거주하는 난민 무슬림들은 생활 언어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구어체 아랍어를 사용하고 (팔레스타인방언, 암미예) 있다. 그러므로 아랍 크리스천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반다이크 버전의 성경을 사용하여 무슬림 난민들에게 접근할 때 아랍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난민들은 읽을 순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IV. 구체적인 실행 방법

전도대상자와 함께 요한복음 읽기 전에 어떻게 읽을 것인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다. 요한복음을 다음과 같이 3등분 하여 전도대상자와 함께 일주일에 1~2

회를 함께 읽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 1) 1~5장을 14회 (2~4개월): 전도대상자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 2) 6~10장을 23회 (2~4개월):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의 차이를 알게 된다.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무슬림 종교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는 시기.
- 3) 11~21장을 40회 (2~4개월): 11장의 나사로 사건은 복음 제시에 효과적이다.

위와 같이 만난 횟수와 읽을 장의 분량을 정하고 실행했다. 한 번에 읽을 때 20구절 정도를 함께 읽는다. 전도대상자가 먼저 한 구절을 큰 소리로 읽으면 필자가 뒤에서 따라 읽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성경 읽기 방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필자와 무슬림 난민과의 관계가 초기에 성립되고 필자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 무엇인가 전도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자신이 무슬림 난민 처지라 할지라도 필자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난민이 많이 있었다. 이때 필자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아랍어 읽기 공부의 도움을 요청하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한 번 만날 때 요한복음의 20절 정도를 두 번 천천히 읽었다. 이렇게 읽다 보면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도대상자가 읽은 성경의 구절을 필자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되면 전도대상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지 필자는 알 수 있다. 필자는 될수록 성경 주석의 설명을 전도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도대상자가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유도했다. 요한복음 1장은 강력하다. 무슬림이 싫어하는 단어의 나열들이 가득하다. 특히 34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은 무슬림 전도대상자들이 읽다가 혀를 내두르거나 성경을 집어 던질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해 본 결과 갈등의 모습들은 있었지만, 극단적 행동을 하는 대상자들은 적었다. 그만큼 전도자들과 필자의 관계가 미리 잘 형성되어 있었고 기독교인에 관한 관심이 대상자들에게 있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은 세례 요한이다. 무슬림 난민 전도대상자들은 세례 요한을 ‘야흐야’라는 자신들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전도대상자가 존경하는 선지자 ‘야히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필자와 전도대상자 사이의 복음의 대결적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도대상자와 초기 4회 정도의 만남을 통해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 1장을 넘

기고 나면 이 전도 방법의 큰 고비는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을 10장까지 함께 읽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인간적인 감동과 신적 존경심을 전도대상자들은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자신들의 처지와 같이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히는 당시 종교인들을 통해 지금 무슬림 세계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며 결국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지속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체험을 난민 무슬림들은 하게 된다. 그리고 영접 후에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니 다음의 양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저항감이 없이 자연스러워진다. 영접 후에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고 8장을 읽고 세례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V. 글을 마치며

최근에 요한복음으로 성경 읽기 전도 방법이 요르단을 시작으로 오만, 카타르,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레바논 선교사들에게도 소개되었다. 현지인 무슬림 전도 사역에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체류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전도와 양육에 요한복음 읽기를 통한 실천적 사례를 적용하여 구원과 영생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시리아 난민 위기가 튀르키예에 미치는 영향

김 종 일 (아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위기와 위기관리
- III. 망명 신청자와 난민
- IV. 시리아 난민 위기
- V. 경제적 영향
- VI. 사회적 영향
- VII. 문화적 영향과 보안 문제
- VIII. 결론

국문 초록

중동에서 발생하는 많은 위기가 튀르키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튀르키예는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중동의 반정권 민중 봉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랍 민족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에 대한 요구로 촉발된 이 봉기의 마지막 종착지는 시리아 아랍 공화국이었다.

민중 봉기에 대한 시리아 정권의 강경한 태도와 이후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민간인들의 이주가 이어졌다. 내전이 격화되면서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이 튀르키예로 이주했다. 튀르키예는 "문호 개방" 정책의 틀 안에서 국경을 통해 들어온 시리아인을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 결과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튀르키예에서도 일부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단어: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내전, 문호 개방 정책, 임시 보호 상태, 위기관리.

I. 서론

국가는 끊임없이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는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발생한다. 국가 내에서 발생한 위기가 커지면 지역적 또는 국제적 위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잘 관리해야 한다.⁶⁵⁾

2010년 튀니지에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에 대한 아랍 민중들의 요구로 촉발된 민중 봉기가 시작되었다. 2011년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서 시작된 내전은 민간인 이주로 이어졌다. 2011년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민중 봉기에 대한 시리아 정권의 강경한 태도와 이후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민간인 이주가 발생했다. 시리아 내전의 폭력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이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북아프리카 및 유럽국가, 특히 튀르키예로 이주했다.

최초의 시리아 난민은 2011년 4월 29일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그 이후로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수는 점차 증가했다. '문호 개방' 정책의 틀 안에서 튀르키예에 입국한 시리아인은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고 '임시 보호 지위'⁶⁶⁾를 부여했다.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의 증가는 다차원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안보적 결과를 초래하는 이주 위기로 이어졌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 위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난민 위기를 관리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난민은 국경에 입국한 후 등록한 후 수용소에 배치된다. 그러나 캠프의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캠프 밖의 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캠프 밖의 난민들이 구걸한다는 사실과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사회의 인식은 치안 문제로 이어진다.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머무르는 경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나라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서 살 수 있는 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은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이 달라서 튀르키예에 통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난민을 위한 사회 통합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몇 가지 법적 규제가 필요했다.

65) 탈냉전 시대, 특히 9/11 테러 이후 안보의 개념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NATO,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국가는 위기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66) 임시 보호: "강제 출국한 외국인, 출국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 대량 유입 또는 대량 유입 기간에 개별적으로 국경에 오거나 국경을 넘는 외국인으로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국제 보호 자격 결정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보, "임시 보호 규정, 제7조" 참조, http://www.goc.gov.tr/files/files/03052014_6883.pdf.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경제적 비용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튀르키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 난민으로 인한 튀르키예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용 센터에서 난민을 위해 사들이는 대부분의 지원 물품은 현지 기업에서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에서 구매한 구호물자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기-위기관리와 망명 신청자-난민의 개념에 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 과학에서 개념의 의미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논의할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언급된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시리아인이 튀르키예에서 망명을 신청자면 언론과 학술 연구 모두에서 시리아인 망명 신청자와 난민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비슷한 혼란을 피하고자 망명 신청자와 난민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시리아 난민 위기와 튀르키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리아 난민 위기가 튀르키예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밝히고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시리아 난민 위기에 대한 튀르키예의 대비책과 난민 위기 전반에 걸쳐 통제된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이 위기를 관리했다.

II. 위기 및 위기관리

인류 역사에서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화산 폭발, 지진, 산사태, 허리케인 등 초자연적인 사건은 물론 경제 위기, 내전, 이주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과 상황도 역사의 모든 시기에 사람과 사회가 직면해 왔다. 이러한 사건과 상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됐다. 21세기에는 위기라는 개념으로 명명되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좋거나 나쁨으로 돌아가는 시점, 갑작스러운 악화 및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⁶⁷⁾ 시거(Seeger), 셀나우(Sellnow), 울머(Ulmer)에 따르면, 위기는 조직의 주요 목표를 위협하고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67) Kadir Canöz-Ayşe Gedikçi Öndoğan, “Kriz Yönetiminde Dönüşümcü Liderin Rolü”, Gümüşhane Üniversitesi İletişim Fakültesi Elektronik Dergisi, 2015, 제3권, 1호, 38.

수반하는 구체적이고 예기치 못한 비일상적 사건이다.⁶⁸⁾

보인(Boin)의 정의에 따르면, 위기는 기본 규범과 가치, 사회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위협이 있거나 위협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위기는 국가 가치를 위협하는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⁶⁹⁾

위기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인해 위기 당사자들은 단기간에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⁷⁰⁾ 이때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위기관리는 일반적으로 비상한 경영 관행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주로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과정도 포함된다.⁷¹⁾

위기의 규모(대규모, 소규모, 개인 또는 기관)와 관계없이 모든 위기에는 즉각적인 개입, 즉 관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센터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기관리는 "위기 상황의 진단부터 필요한 지침 결정의 취사선택, 실행, 모니터링 및 통제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⁷²⁾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위기관리는 위기를 예방, 완화 및 종식하는 기술을 말한다.⁷³⁾ 차크마크(Çakmak)에 따르면, 위기관리는 "위기를 종식하거나 새로운 위기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종결하기 위해 관련 개인과 조직을 모아 공동의 결정이나 권고를 내리는 과정"이다.⁷⁴⁾ 데데오울루(Dedeoğlu)에 따르면, 위기관리는 주로 정치적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한 '억지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⁷⁵⁾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위기관리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언론 및 홍보 역량이 뒷받침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⁷⁶⁾

국가에 위기 상황 관리는 필수적일 뿐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 즉시 끝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위기관리를 위해서

68) Matthew Wayne Seeger-Timothy Lester Sellnow-Robert R. Ulmer, "Communication, Organization And Crisis", M. E. Roloff, ed., Communication Yearbook 21, CA: Sage, Thousand Oaks 1998, 233.

69) Arjen Boin, "Lessons From Crisis Research",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제6권, 1호, 2004, 167.

70) Bilal Karabulut, "Düşünce Kuruluşları ve Kriz Yönetimi", Mehmet Seyfettin Erol-Ertan Efeğil, der., Krizler ve Kriz yönetimi: "Temel yaklaşımlar, Aktörler, Örnek Olaylar", Barış Kitap, Ankara 2012, 116.

71) Boin, 168.

72) T.C. Sağlık Bakanlığı, "Başbakanlık Kriz Yönetim Merkezi Yönetmeliği", <http://www.saglik.gov.tr/TR,10420/basbakanlik-kriz-yonetim-merkezi-yonetmeligi.html>.

73)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global.britannica.com>.

74) Haydar Çakmak, *Kriz Yönetimi ve TSK*, Kaynak Yayınları, İstanbul 2012, 49-50.

75) Beril Dedeoğlu, *Uluslararası Güvenlik ve Strateji*, YeniYüzyıl Yayınları, İstanbul 2008, 219.

76) CANÖZ, Kadir ve Ayşe Gedikçi Öndoğan, "Kriz Yönetiminde Dönüşümcü Liderin Rolü", Gümüşhane Üniversitesi İletişim Fakültesi Elektronik Dergisi, 제3권, 1호, 2015. 42.

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객관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준비, 예상치 못한 모든 종류의 요청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⁷⁷⁾ 이 시점에서 위기관리에서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관리자의 책임이 커진다.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전개되고, 정보 흐름과 통제가 어려워지며, 외부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비가 미흡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⁷⁸⁾

위기를 예측하면 제때 적절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⁷⁹⁾ 그러나 위기의 경고 신호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으면 위기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성공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 위기를 해결하려면 국가 내뿐만 아니라 국가 밖에서도 이주가 일어나야 한다. 오늘날 이주는 대부분 두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주가 발생하면 출발 국가와 도착 국가 모두에 위기를 초래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 발생 초기부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주민이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면 새로운 사회와 상호 작용하여 목적지 국가에 일부 위기가 형성된다. 이주 위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위기의 성공률이 감소한다.

III. 망명 신청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와 '난민'이라는 용어의 혼용에 관한 혼란이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국제법에서 '망명 신청자'라는 용어는 튀르키예어로 '망명 신청자'로, '난민'은 '난민'으로 번역된다. 망명 신청자 또는 난민은 종교, 인종, 국적, 정치적 또는 이념적 견해, 고문, 살해에 대한 공포, 자국에 대한 신뢰 상실 등으로 인한 자국에서 박해와 억압 때문에 자국을 떠난다. 정당한 사유로 고국을 떠난 이들은 국제 협약과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목적지 국가에서 망명 신청자 또는 난민 지위를 얻는다.⁸⁰⁾

77) Mustafa Akdağ, "Halkla İlişkiler ve Kriz Yönetimi", *Selçuk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제14호, 2005, 4.

78) Phil Williams, *Crisis Management: Confrontation and Diplomacy in the Nuclear Age*, Martin Robertson, London 1976, 96-98; Canöz-Öndoğan, 42.

79) Tuncer Asunakutlu vd. "Kriz Yönetimi Üzerine Bir Araştırma", *Dokuz Eylül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제3권, 1호, 2003, 141.

이주 용어 사전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관련 국내 또는 국제 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며 난민 지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정의된다.⁸¹⁾ 난민의 권리를 다루고 난민을 정의한 최초의 국제 문서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다음과 같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고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에 노출된 경우, 또는 국적이 없으며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이전 거주지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국 밖에 있으며 그러한 공포로 인해 귀국할 수 없거나 귀국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⁸²⁾

제네바 협약의 최초 서명국 중 하나인 튀르키예는 1961년에 발표한 선언문에 서 "난민"이라는 용어를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로 이해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망명 신청자로 인정한다. 1967년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지리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튀르키예는 이러한 관행을 유지해 왔다.⁸³⁾

망명 신청자와 난민 개념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 튀르키예는 '1994년 규정'으로도 알려진 튀르키예에서 망명을 신청하거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튀르키예에 거주 허가를 요청하는 개별 외국인 및 망명 및 가능한 인구 이동을 목적으로 집단으로 국경에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이며 지리적 유보 조항이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튀르키예는 시리아인이 집중적으로 몰려든 국가 중 하나이다.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부 난민"이라는 개념은 2013년에 발효된 "외국

80) Cengiz Başak, "Mülteciler, Sığınmacılar ve Yasadışı Göçmenler", İçişleri Bakanlığı Genel Yayın, No: 686, 2011, 21-23.

81) Bülent Çiçekli, Göç Terimleri Sözlüğü, IOM Uluslararası Göç Örgütü, Cenevre 2009, 49.

82) BM Mülteciler Yüksek Komiserliği, "Mülteciler Hakkında Yasal ve Bilgilendirici Belgeler", <http://www.unhcr.org/turkey/home.php?page=20>.

83) Bekir Parlak-Ali Utku Şahin, "Türkiye İltica ve Göç Mevzuatının Coğrafi Kısıtlama Uygulaması Yönünden Analizi", TESAM Akademi Dergisi, 제2권, 2호, 2015, 67; İçişleri Bakanlığı Emniyet Genel Müdürlüğü, "İltica Göç İşlemleri", <http://www.egm.gov.tr/Sayfalar/iltica-goc-islemleri.aspx>.

인 및 국제 보호에 관한 법률" 6458호와 함께 사용되었다.⁸⁴⁾

이 법에 따르면, "유럽 국가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 국가 밖에 있고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이전 거주 국가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유럽연합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공포로 인해 해당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은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거쳐 조건부 난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⁸⁵⁾

법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국가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문구가 사용된다. 또한 난민 지위 취득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 조건부 난민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난민 지위를 조건부로 부여하는 법적 규정으로 인해 튀르키예 내 시리아인에 대해 "난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IV. 시리아 난민 위기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권 시위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중동의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반정권 시위는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3월 수니파 인구가 밀집한 '데라(Dera)'에서 첫 시위가 시작되었다. 아랍의 봄의 영향은 데라에 국한되지 않고, 반야스, 라타키아, 하마, 홈스, 데이르에즈조르로 퍼져나갔다. 시리아 정권은 국민의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⁸⁶⁾ 그러나 시리아 정권의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사건의 양상은 달라졌다. 시리아 정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사태는 점점 커져 시리아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내전으로 번졌다. 이러한 분쟁으로 가장 큰

84) Yabancılar ve Uluslararası Koruma Kanunu kapsamında uluslararası koruma sahipleri olarak tespit edilen yabancılarla, kitlesel akın durumlarında acil ve geçici bir tedbir olarak düzenlenen ve kitleler halinde gelen bu yabancılarla toplu olarak verilen bir statü olan "geçici koruma" statüsü birbirinden ayrılmaktadır. Neşe Baran Çelik, "Türk Hukukunda Uluslararası Koruma Başvurusunda Bulunan veya Uluslararası Korumadan Yararlanan Yabancıların Hak ve Yükümlülükleri", İnönü Üniversitesi Hukuk Fakültesi Dergisi Özel Sayı, 제1권, 2015, 70.

85) Resmi Gazete, "Yabancılar ve Uluslararası Koruma Kanununun Uygulanmasına İlişkin Yönetmelik", Madde 3, Birinci Fıkra'nın ee Bendi, http://www.goc.gov.tr/files/_dokuman5.pdf.

86) Umut Koldaş-Nur Köprülü, "Arap intifadası mı?: Arap Dünyasındaki Toplumsal Hareketlerin İçsel, Bölgesel ve Uluslararası Dinamikleri", Akademik Ortadoğu, 제6권, 1호, 2011, 34.

피해를 당한 것은 민간인이었다. 분쟁이 격렬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북아프리카, 유럽 국가, 특히 튀르키예로 이주했다.

국가	시리아 난민 수
튀르키예	2,967,149
레바논	1,011,366
유럽국가	884,461
요르단	657,000
이라크	233,224
이집트	120,154
북아프리카	29,275
합계	5,018,168

표-1) 유엔난민기구 데이터에 따른 국가별 시리아 난민 현황⁸⁷⁾

표-1) 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3월 30일 현재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수는 2,967,149명에 달한다. 첫 번째 시리아 난민 그룹은 2011년 4월 29일 질베괴주(Cilvegözü) 국경을 통해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그 이후로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수는 점차 증가했다. 튀르키예는 '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 내전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시리아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다.⁸⁸⁾ 또한 '문호 개방' 정책의 틀 안에서 튀르키예에 입국한 시리아인들에게는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했다.⁸⁹⁾ 임시 보호는 갑작스러운 대량 인구 이동이 국경을 향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구 이동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임시 해결책이다.⁹⁰⁾

시리아 난민은 튀르키예 국경에 입국한 후 등록한 후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지방으로 이송된다. 시리아 난민 수를 늘리고 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개 주에 22개의 수용 센터가 설립되었다. 수용소에 대한 책임은 관련 공공기관(수용소 보안은 내무부, 교육은 국립교육부 등)에 분산되어 있으며 AFAD(Afet ve Acil Durum Yönetimi Başkanlığı, 튀르키예 재난 응급 관리청)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⁹¹⁾ 2017년 3월 27일 현재 수용소에는 262,868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

87) UNHRC Data Portal, Syria Regional Refugee Response,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88) “Suriye’den Türkiye’ye Nüfus Hareketleri Kardeş Topraklarındaki Misafirlik”, AFAD, Ankara 2014, 5.

89) 튀르키예는 1994년 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시 보호 체제'에 따라 시리아 난민을 받았다. 임시 보호 체제에는 원칙적으로 문호 개방 정책, 송환 금지, 수용소 수용 및 기타 기본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참고. Suna Gülfer İhlamur-Öner, “Türkiye’nin Suriyeli Mültecilere Yönelik Politikası”, Ortadoğu Analiz, 6권 61호 43-44; Göç İdaresi Genel Müdürlüğü, “Geçici Koruma Yönetmeliği”, http://www.goc.gov.tr/files/files/03052014_6883.pdf.

90) Joan Fitzpatrick, “Temporary Protection of Refugees: Elements of a Formalized Regim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4권 2호, 2000, 279-282.

91) “Barınma Merkezlerinde Son Durum”, AFAD, <https://www.afad.gov.tr/tr/2374/Barınma->

다.⁹²⁾ 캠프 밖의 시리아 난민은 킬리스, 하타이, 가지안테프, 카흐라만마라쉬 등 지방과 이스탄불, 이즈미르, 앙카라, 아다나, 부르사, 메르신 등 대도시에서 분산되어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 인구 대비 시리아 난민 비율이 높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포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주는 지리적 이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주민은 자신의 생활 방식, 습관, 신념 및 문제를 목적지 국가로 옮긴다. 따라서 이주는 이주민과 이주민 사회 모두의 삶에 풍요로움과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주는 경제, 사회, 문화 및 안보 현상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⁹³⁾ 이 연구의 다음 부분에서는 시리아의 난민이 튀르키예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과 안보 문제를 다룰 것이다.

V. 경제적 영향

시리아 난민이 튀르키예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위험과 기회가 서로 얽혀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시리아 난민은 튀르키예 경제 전반과 특히, 지역 경제에 부담이자 이바지하고 있다.⁹⁴⁾ 이러한 맥락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출국할 때 가져온 현금과 귀중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사실은 현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찬가지로,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료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 두 가지 요인 외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노동 허가 없이 저임금으로 불법 노동자로 일한다는 사실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난민들의 무자격 노동 시장 고용⁹⁵⁾과 이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제조업과 소매업 부문에 부흥을 가져왔다.

Merkezlerinde-Son-Durum.

92) Centre For Transnational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Syrian Refugees in Turkey: Gender Analysis", London 2015, 4.

93) Fikret Elma-Ahmet Şahin, "Suriye'den Türkiye'ye Göç ve Açığa Çıkan Temel Sorun Alanları", Turkish Migration Conference 2015 Selected Proceedings, Transnational Press, London 2015, 430-431.

94) Oytun Orhan-Sabiha Senyücel Gündoğar, Suriyeli Sığınmacıların Türkiye'ye Etkileri, Rapor No: 195, 2015, 17.

95) 취업 허가가 없는데도 저임금으로 일하는 시리아 난민을 고용하는 데는 몇 가지 법적 규제가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시 보호 신분을 가진 외국인의 노동 시장 접근을 규제하는 2016년 1월 15일 자 8375호, "임시 보호 외국인 노동 허가 규정"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은 계절 농업 또는 축산업에서만 일할 수 있다. 참고, 튀르키예 노동고용부, "임시 보호 외국인 취업 허가 시행 가이드", <http://www.calismaizni.gov.tr/media/1035/gkkuygulama>.

또한 캠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품을 현지 공급 업체로부터 국가가 조달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⁹⁶⁾ 따라서 시리아 난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보상되었다.⁹⁷⁾

시리아 난민의 튀르키예 도착으로 인해 난민을 위한 지출로 인해 경제에 비용이 발생했다. 2017년 2월 기준 AFAD 데이터에 따르면,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해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및 일반 대중이 지출한 총비용은 250억 달러에 달한다.⁹⁸⁾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럽연합의 원조는 총 5억 8,800만 유로이다.⁹⁹⁾ 또한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타 외국의 튀르키예 원조는 총 4억 5,500만 달러에 달한다.¹⁰⁰⁾ 시리아 난민에 대한 튀르키예의 지원과 시리아 난민을 위해 튀르키예로 보내진 외국 원조 금액을 비교하면 튀르키예가 난민 사태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한 데 비해, 국제 사회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시리아 난민 위기가 시작된 이래 튀르키예의 지원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국민 소득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기부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인도주의 기부 국가가 되었다.¹⁰¹⁾

시리아 난민들이 창출한 값싼 노동력은 특히 현지 인구의 중하위 경제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값싼 노동력과 경쟁은 비숙련 노동 시장의 임금을 낮췄다. 증산층은 임대료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¹⁰²⁾ 또한 시리아 난민들이 가져온 자금이 고갈되고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시리아 난민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경제

96) Oytun Orhan, “Suriye’ye Komşu Ülkelerde Suriyeli Mültecilerin Durumu: Bulgular, Sonuçlar ve Öneriler”, Orsam Rapor No: 189, 2014. 4, 18-19.

97) Oytun Orhan, “Suriye’ye Komşu Ülkelerde Suriyeli Mültecilerin Durumu: Bulgular, Sonuçlar ve Öneriler”, Orsam Rapor No: 189, Nisan 2014, s. 18-19.

98) T.C. İçişleri Bakanlığı, “İçişleri Bakanı Süleyman Soylu: Türkiye Hiç Kimseyi Kapıdan Çevirmemiştir”, <https://www.icisleri.gov.tr/icisleri-bakani-suleyman-soylu-turkiye-hic-kimseyi-kapidan-cevirmemistir>, (Erişim Tarihi: 02.04.2017).

99)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ECHO), “Turkey: Refugee Crisis”, 2, http://ec.europa.eu/echo/files/aid/countries/factsheets/turkey_syrian_crisis_en.pdf, (Erişim Tarihi: 01.04.2017); Avrupa Birliği’nin Suriyeli mültecilere yaptığı yardımlar için ayrıca bkz. European Commission, “Managing The Refugees Crisis The Facility For Refugees In Turkey”, 4, http://bruessel.daad.de/medien/bruessel/info_turkey_facility.pdf.

100) Basın Yayın ve Enformasyon Genel Müdürlüğü, “Türkiye’nin Dış Yardımları”, 2, http://www.byegm.gov.tr/uploads/docs/fact_sheet-insani_yard%C4%B1m.pdf.

101)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 2016, <http://www.globalhumanitarianassistance.org/wp-content/uploads/2016/07/GHA-report-2016-full-report.pdf>

102) 시리아 난민이 집중된 아다나, 가지안테프 등의 지역에서는 지역 CPI 지수가 튀르키예 평균보다 높다. 2015년 12월 기준 튀르키예 전체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9.6%지만 아다나와 가지안테프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10.8%였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차이는 주로 높은 임대료 인상과 부분적으로는 식료품 가격 인상에 기인한다.

적 문제를 넘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도 발생했다.¹⁰³⁾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도착하면서 국경 지역에서는 밀입국이 증가했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¹⁰⁴⁾ 또한 중동 지역의 혼란과 불안정은 튀르키예의 중동 국가와의 교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흔들리고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¹⁰⁵⁾

VI. 사회적 영향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회 통합의 문제이다.¹⁰⁶⁾ 난민과 현지인 간의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이 현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종교적 결혼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이혼, 여성과 아동 학대에 대한 소문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또한 일부 도시에서 인종적, 종파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회적 영향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¹⁰⁷⁾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중 53.2%는 여성, 46.2%는 남성이다. 시리아 난민의 44.7%는 어린이이다(0~4세 13.7%, 5~11세 16.2%, 12~17세 14.8%).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연령 분포에 있어서는 불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⁸⁾ 데이터에 따르면, 시리아 청년 인구는 높은 비율과 강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 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인구를 위해 교육, 건강 등과 같은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적 지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 결속력이 높은 젊은 인구가 시리아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¹⁰⁹⁾

103) Orhan, 19.

104) Orhan, 19.

105) Arif Akgül vd. “Göç ve Kamu Politikaları: Suriye Krizi Üzerine Bir Analiz”, The Global A Journal of Policy and Strategy, 제1권 2호, 2015, 10.

106) Mustafa Karataş, “Türk Yazılı Basınında Suriyeli Sığınmacılar İle Halk Arasındaki İlişkinin İncelenmesi”, Göç Araştırmaları Dergisi, 1권, 2호, 2015, 118.

107) Orhan-Gündoğar, 16.

108) UNHRC Data Portal, “Syria Regional Refugee Response-Turkey”,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country.php?id=224>.

109) Uluslararası Kitleli Göçler ve Türkiye’deki Suriyeliler, I. Uluslararası Göç ve Güvenlik Konferansı Sonuç Raporu, Polis Akademisi Yayınları Rapor-6, 11-13 2016, 11. 27.

시리아 난민의 91%는 튀르키예 사회와 얽힌 캠프 밖에서 살고 있다. 캠프 밖 시리아 난민의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다. 학령기 시리아 난민 아동의 40% 이상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캠프 밖에서 생활하는 시리아 난민 아동의 수를 고려할 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¹¹⁰⁾

2013년 1월 18일, 튀르키예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리아 난민이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람을 발표했다. 이 회람을 통해 시리아 난민은 튀르키예 시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¹¹¹⁾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이 무료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으면서 응급실을 가득 메우고 붐비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의료 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리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긴다.¹¹²⁾

캠프 밖 시리아 난민에 대한 사회적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시리아 결인들이다. 시리아에서 튀르키예로 온 후 저축한 재산을 모두 소진하고 가난해져 구걸할 수밖에 없는 시리아인의 수는 극히 적다. 결인들은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인의 이미지를 손상하기 때문에 시리아인 스스로 자제한다.¹¹³⁾

VII. 문화적 영향과 보안 문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의 문화적 영향과 안보 우려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리아인의 인종적, 종교적, 종파적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튀르키예로 오는 시리아 난민의 상당수는 수니파 아랍인이다. 그다음으로는 쿠르드족과 튀르크메니스탄족이 그 뒤를 잇는다. 2014년 튀르키예 내 시리아인의 인종적, 종교적, 종파적 다양성은 테러 조직인 '다에시'의 공격이 증가하면서 변화했

110)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유엔과 파트너들, 터키의 시리아 난민과 호스트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기금 조성 촉구", <http://www.unhcr.org/turkey/home.php?content=726>.

111) T.C. Sağlık Bakanlığı Türkiye Kamu Hastaneleri Kurumu, <http://www.tkhk.gov.tr/Dosyalar/fca898e4114b40efa25741bb8d2978bf.pdf>.

112) Erdoğan, 19; 201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리아 난민에게 2천만 건 이상의 외래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한 96만 7천 명의 시리아인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약 82만 4천 건의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국경에서 후송된 약 3만 5천 명의 시리아인 부상자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7만 7천 명의 시리아 아기가 태어났으며, 의료 기관에서 이 아기들에게 91만 8천 694건의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참고, Bülent Sarıoğlu, "Nur Topu Gibi 177 Bin Suriyelimiz Oldu", <http://www.hurriyet.com.tr/nur-topu-gibi-177-bin-suriyelimiz-oldu-40277905>.

113) M. Murat Erdoğan, Türkiye'deki Suriyeliler Toplumsal Kabul ve Uyum, İstanbul Bilgi Üniversitesi Yayınları, İstanbul 2015, 37-38.

다.¹¹⁴⁾ 아인 알 아랍(코바니) 사건으로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 출신 시리아인의 수가 증가했다. 또한 시리아 정권, 러시아, ‘DAESH’와 ‘PYD’ 테러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투르크멘인의 수도 증가했다. 현지인들은 민족적, 종교적, 종파적 특성이 같은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자신과 다른 난민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튀르키예인은 투르크멘인을, 쿠르드족은 쿠르드족과 야지디족을, 아랍인은 아랍인을, 알레비 족은 같은 알레비 족을 포용하는 반면, 다른 민족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난민은 소외되고 있다.¹¹⁵⁾

이주와 문화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있다. 이민자들은 이주한 정착지에 자신의 문화적 조직을 가지고 가서 그곳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사회 통합 문제가 발생한다.¹¹⁶⁾ 관용의 개념과 밀접한 의미를 지닌 사회 결속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개 이상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시리아 난민이 개입하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큰 단절을 일으키지 않았다.¹¹⁷⁾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공동체의 종교적, 문화적 친밀성이다. 이주 문헌에 따르면 난민 중 일부는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회 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¹¹⁸⁾

시리아 난민의 증가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안보 문제는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안보의 개념은 국가 안보와 사회 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¹¹⁹⁾ 시리아 난민이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후 치안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튀르키예-시리아 국경선에서의 불법 입국, 난민들 사이에 DAESH, PKK, YPG/PYD 등 테러 조직 요소가 존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것, 수용소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수용소 밖에서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이 현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많은 튀르키예 시민이 이러한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¹²⁰⁾ 또한 국경 양

114) Erdoğan 108.

115) Erdoğan, 23.

116) Mim Sertaç Tümtaş-Cem Ergun, “Göçün Toplumsal ve Mekânsal Yapı Üzerindeki Etkileri”, Süleyman Demirel Üniversitesi İktisadi ve İdari Bilimler Fakültesi Dergisi, 21권, 4호, 2016, 1352.

117) Serdar Ünal, “Türkiye’nin Beklenmedik Konukları: ‘Öteki’ Bağlamında Yabancı Göçmen ve Mülteci Deneyimi”, Journal of World of Turk, 6권, 3호, 2014, 76.

118) Uluslararası Kitleli Göçler ve Türkiye’deki Suriyeliler, 17.

119) Osman Bahadır Dinçer vd., “Suriyeli Mülteciler Krizi Türkiye Sonu Gelmeyen Misafirlik”, Uluslararası Stratejik Araştırmalar Kurumu & Brookings Enstitüsü, Ankara 2013, 13.

120) 터키를 대상으로 한 14건의 테러 조직 '데쉬'의 공격으로 총 263명이 목숨을 잃고 127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브리 차키르, "테러 조직 ISIS의 터키 공격", Haber Türk, <http://www.haberturk.com/gundem/haber/1264903-teror-orgutu-isidin-turkiyeye-yonelik-gerceklestirdigi-saldirilar>를 참조하십시오.

쪽의 소수 민족, 종교 및 종파적 소수 민족과 시리아 분쟁이 튀르키예로 파급될 위험으로 인해 사회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¹²¹⁾

VIII. 결론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새로운 위기¹²²⁾에 직면했다. 시리아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난민 위기가 발생하고 튀르키예가 이 위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튀르키예는 위기 이전부터 시리아 난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위기에 대비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 국경에 들어오면 등록을 한 후 수용소에 수용한다. 따라서 튀르키예는 난민을 통제함으로써 위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다. 난민 위기가 시작될 때 시리아인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기는 평범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

시리아 내전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내전은 예상외로 오래 지속되었고 튀르키예 내 난민 수는 점차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난민에 대한 법적 규제와 난민을 위한 사회 정책 개발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리아인이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일부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 노동권 등 여러 분야에서 시리아인이 난민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머무르는 경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난민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면 시리아인은 튀르키예 시민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시리아 난민에게 일할 권리와 교육 및 건강과 같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단계로 간주한다. 시리아 난민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어를 배우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되면 난민과 튀르키예 사회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난민들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운 기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시리

121) Osman Ağır-Murat Sezik, “Suriye’den Türkiye’ye Yaşanan Göç Dalgasından Kaynaklanan Güvenlik Sorunları”, *Birey ve Toplum*, 5권 9호, 2015, 107-111.

122) 새로운 위기: 일정 기간 문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위기를 의미한다. 위기 발생의 준비 기간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위기의 원인이 되는 문제(이슈)가 천천히 발전하기 때문이다. Çakmak, 33 참조할 것.

아 난민에 대한 외국인 혐오, 사회적 배제 및 차별과 같은 일부 시도와 도발은 주의를 피할 수 없다. 시리아 난민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시리아 난민이 손님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회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난민들의 통합을 지연시킬 수 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 사회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문제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 사회의 효과적인 지원과 협력이 중요해진다.

난민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시리아에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한 완충 지대나 안전지대가 설치되면 난민이 튀르키예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시리아 난민과 다른 사회의 사회 통합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참고 문헌

- “Syria Regional Refugee Response”, UNHRC Data Portal,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 “Syria Regional Refugee Response-Turkey”, UNHRC Data Portal,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country.php?id=224>,
- AĞIR, Osman, Murat Sezik, “Suriye’den Türkiye’ye Yaşanan Göç Dalgasından Kaynaklanan Güvenlik Sorunları”, Birey ve Toplum, Cilt: 5, Sayı: 9, 2015.
- AKDAĞ, Mustafa, “Halkla İlişkiler ve Kriz Yönetimi, Selçuk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Sayı: 14, 2005.
- AKGÜL, Arif vd., “Göç ve Kamu Politikaları: Suriye Krizi Üzerine Bir Analiz”, The GLOBAL A Journal of Policy and Strategy, Cilt: 1, Sayı: 2, 2015.
- ASUNAKUTLU, Tuncer, Barış Safran ve Elif Tosun, “Kriz Yönetimi Üzerine Bir Araştırma”, Dokuz Eylül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Cilt: 3, Sayı: 1, 2003.
- Barınma Merkezlerinde Son Durum, AFAD, <https://www.afad.gov.tr/tr/2374/Barinma-Merkezlerinde-Son-Durum>,
- Basın Yayın ve Enformasyon Genel Müdürlüğü, “Türkiye’nin Dış Yardımları”, http://www.byegm.gov.tr/uploads/docs/fact_sheet-insani_yard%C4%B1m.pdf.
- BAŞAK, Cengiz, “Mülteciler, Sığınmacılar ve Yasadışı Göçmenler”, İçişleri Bakanlığı Genel Yayın No: 686, 2011.

- BM Mülteciler Yüksek Komiserliği, “Birleşmiş Milletler ve Ortakları Türkiye’deki Suriyeli Mülteciler ve Ev Sahibi Topluluklar İçin Yeni Bir Fon Çağrısında Bulunuyor”, <http://www.unhcr.org/turkey/home.php?content=726>,
- BM Mülteciler Yüksek Komiserliği, “Geçici Koruma Ne Demektir?”, <http://www.unhcr.org/turkey/home.php?content=43&page=29>, (Erişim Tarihi: 01.04.2017). BM Mülteciler Yüksek Komiserliği, “Mülteciler Hakkında Yasal ve Bilgilendirici Belgeler”, <http://www.unhcr.org/turkey/home.php?page=20>.
- BOIN Arjen, “Lessons From Crisis Research”,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Cilt: 6, Sayı: 1, 2004.
- CANÖZ, Kadir ve Ayşe Gedikçi Öndoğan, “Kriz Yönetiminde Dönüşümcü Liderin Rolü”, Gümüşhane Üniversitesi İletişim Fakültesi Elektronik Dergisi, Cilt: 3, Sayı:1, 2015.
- Centre For Transnational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Syrian Refugees in Turkey: Gender Analysis”, London 2015.
- ÇAKIR, Fevzi, “Terör Örgütü IŞİD’in Türkiye’ye Yönelik Gerçekleştirdiği Saldırıları”, <http://www.haberturk.com>.
- gundem/haber/1264903-teror-orgutu-isidin-turkiyeye-yonelik-gerceklestirdigi-saldirilar, ÇAKMAK, Haydar, Kriz Yönetimi ve TSK, Kaynak Yayınları, İstanbul 2012.
- ÇELİK, Neşe Baran, “Türk Hukukunda Uluslararası Koruma Başvurusunda Bulunan veya Uluslararası Korumadan Yararlanan Yabancıların Hak ve Yükümlülükleri”, İnönü Üniversitesi Hukuk Fakültesi Dergisi Özel Sayı, Cilt: 1, 2015.
- Çiçekli Bülent, Göç Terimleri Sözlüğü. IOM Uluslararası Göç Örgütü, Cenevre 2009.
- DEDEOĞLU, Beril, Uluslararası Güvenlik ve Strateji, Yeniüzyıl Yayınları, İstanbul 2008.
- DİNÇER, Osman Bahadır vd., “Suriyeli Mülteciler Krizi Türkiye Sonu Gelmeyen Misafirlik”, Uluslararası Stratejik Araştırmalar Kurumu & Brookings Enstitüsü, Ankara 2013.
- ELMA, Fikret ve Ahmet Şahin, “Suriye’den Türkiye’ye Göç ve Açığa Çıkan Temel Sorun Alanları”, Turkish Migration Conference 2015 Selected Proceedings, Transnational Press, London 2015.
- Encyclopedia Britannica, <https://global.britannica.com>.
- ERDOĞAN, M. Murat, Türkiye’deki Suriyeliler Toplumsal Kabul ve Uyum, İstanbul Bilgi Üniversitesi Yayınları, İstanbul 2015.
- EROL, Mehmet Seyfettin ve Ertan Efeğil, ed., Krizler ve Kriz yönetimi: “Temel yaklaşımlar, Aktörler, Örnek Olaylar”, Barış Kitap, Ankara 2012.
- EROL, Mehmet Seyfettin, Şafak Oğuz, ”NATO ve Kriz Yönetimi”, Mehmet Seyfettin Erol, ed., Sıcak Barış’ın Soğuk Örgütü: Yeni NATO “Yeni Tehditler, Konseptler, Arayışlar, Dönüşüm ve Alan Dışı Operasyonlar”, Barış Kitap, Ankara 2012.
- 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s (ECHO), “Turkey: Refugee Crisis”, http://ec.europa.eu/echo/files/aid/countries/factsheets/turkey_syrian_crisis_en.pdf,

- European Commission, "Managing The Refugees Crisis The Facility For Refugees In Turkey", http://bruessel.daad.de/medien/bruessel/info_turkey_facility.pdf.
- FITZPATRICK, Joan, "Temporary Protection of Refugees: Elements of a Formalized Regime",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Cilt:94, Sayı: 2, 2000.
-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 2016, <http://www.globalhumanitarianassistance.org/wp-content/uploads/2016/07/GHA-report-2016-full-report.pdf>.
- Göç İdaresi Genel Müdürlüğü, "Geçici Koruma Yönetmeliği", http://www.goc.gov.tr/files/files/03052014_6883.pdf.
- Göç İdaresi Genel Müdürlüğü, <https://twitter.com/gocidaresi>.
- İçişleri Bakanlığı Emniyet Genel Müdürlüğü, "İltica Göç İşlemleri", <http://www.egm.gov.tr/Sayfalar/iltica-goc-islemleri.aspx>.
- İçişleri Bakanlığı Göç İdaresi Genel Müdürlüğü, "6458 Sayılı Yabancılar ve Uluslararası Koruma Kanunu Yürürlüğe Girdi", http://www.goc.gov.tr/icerik6/6458-sayili-yabancilar-ve-uluslararasi-koruma-kanunu-yururluge-girdi_350_361_607_icerik.
- KARABULUT, Bilal, "Düşünce Kuruluşları ve Kriz Yönetimi", Mehmet Seyfettin Erol-Ertan Efegil, ed., Krizler ve Kriz yönetimi: "Temel yaklaşımlar, Aktörler, Örnek Olaylar", Barış Kitap, Ankara 2012.
- KARATAŞ, Mustafa, "Türk Yazılı Basınında Suriyeli Sığınmacılar İle Halk Arasındaki İlişkinin İncelenmesi", Göç Araştırmaları Dergisi, Cilt:1, Sayı: 2, 2015.
- KOLDAŞ, Umut ve Nur Köprülü, "Arap intifadısı mı?: Arap Dünyasındaki Toplumsal Hareketlerin İçsel, Bölgesel ve Uluslararası Dinamikleri", Akademik ORTA DOĞU, Cilt: 6, Sayı: 1, 2011.
- Mülteci Hakları Merkezi, "Suriye'den Gelen Sığınmacılar İçin Türkiye'de Geçici Koruma", 2., http://mhd.org.tr/assets/tp_booklet_tr.pdf.
- ORHAN, Oytun, Suriye'ye Komşu Ülkelerde Suriyeli Mültecilerin Durumu: Bulgular, Sonuçlar ve Öneriler, Orsam Rapor, No:189, Nisan 2014.
- ORHAN, Oytun ve Sebiha Senyücel Gündoğar, Suriyeli Sığınmacıların Türkiye'ye Etkileri, Rapor No:195, Ocak 2015.
- ÖNER, Suna ve Gülfer İhlamur, "Türkiye'nin Suriyeli Mültecilere Yönelik Politikası", Ortadoğu Analiz, Cilt: 6, Sayı:61.
- PARLAK, Bekir ve Ali Utku Şahin, "Türkiye İltica ve Göç Mevzuatının Coğrafi Kısıtlama Uygulaması Yönünden Analizi", TESAM Akademi Dergisi, Cilt:2, Sayı: 2, 2015.
- Resmi Gazete, "Geçici Koruma Yönetmeliği", Madde 7, http://www.goc.gov.tr/files/files/03052014_6883.pdf.
- Resmi Gazete, "Yabancılar ve Uluslararası Koruma Kanununun Uygulanmasına İlişkin Yönetmelik", Madde 3, Birinci Fıkra'nın Bendi, http://www.goc.gov.tr/files/_dokuman5.pdf.
- SARIOĞLU, Bülent, "Nur Topu Gibi 177 Bin Suriyelimiz Oldu", Hürriyet, <http://www.hurriyet.com.tr/nur-topu-gibi-177-bin-suriyelimiz-oldu-40277905>. SEEGER, Matthew Wayne et al., "Communication, Organization And Crisis", M. E.

- Roloff (Ed.), Communication Yearbook 21, CA: Sage, Thousand Oaks 1998.
- Suriye’den Türkiye’ye Nüfus Hareketleri Kardeş Topraklarındaki Misafirlik, AFAD, Ankara 2014.
- T.C. Çalışma ve Sosyal Güvenlik Bakanlığı, “Geçici Koruma Sağlanan Yabancıların Çalışma İzinlerine Dair Uygulama Rehberi”, <http://www.calismaizni.gov.tr/media/1035/gkkuygulama.pdf>.
- T.C. İçişleri Bakanlığı, “İçişleri Bakanı Süleyman Soylu: Türkiye Hiç Kimseyi Kapıdan Çevirmemiştir”, <https://www.icisleri.gov.tr/icisleri-bakani-suleyman-soylu-turkiye-hic-kimseyi-kapidan-cevirmemistir>.
- T.C. Sağlık Bakanlığı Türkiye Kamu Hastaneleri Kurumu, <http://www.tkhk.gov.tr/Dosyalar/fca898e4114b40efa25741bb8d2978bf.pdf>,
- T.C. Sağlık Bakanlığı, “Başbakanlık Kriz Yönetim Merkezi Yönetmeliği”, <http://www.saglik.gov.tr/TR,10420/basbakanlik-Tarihi:kriz-yonetim-merkezi-yonetmeligi.html>.
- TÜMTAŞ, Mim Sertaç ve Ergun Cem, “Göçün Toplumsal ve Mekânsal Yapı Üzerindeki Etkileri”, Süleyman Demirel Üniversitesi İktisadi ve İdari Bilimler Fakültesi Dergisi, Cilt: 21, Sayı: 4, 2016. Uluslararası Kitleli Göçler ve Türkiye’deki Suriyeliler, I. Uluslararası Göç ve Güvenlik Konferansı Sonuç Raporu, Polis Akademisi Yayınları Rapor-6, 11-13 Kasım 2016.
- ÜNAL, Serdar, “Türkiye’nin Beklenmedik Konukları: ‘Öteki’ Bağlamında Yabancı Göçmen ve Mülteci Deneyimi”, Journal of World of Turk, Cilt:6, Sayı:3, 2014.
- ÜSTÜN, Nazlı, Suriyelilerin Türk İşgücü Piyasasına Enregrasyonu Sorunlar-Öneriler, Araştırma Raporu, 2016.
- WILLIAMS, Phil, Crisis Management: Confrontation and Diplomacy in the Nuclear Age, Martin Robertson, London 1976.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의 국내 정착과 지원 방안

김종홍¹²³⁾

I. 들어가며

작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 동포¹²⁴⁾들의 탈출 행렬이 많아질 무렵 김종홍 선교사가 사역하던 오데사 사랑의 교회 교인 대부분은 인근 몰도바와 루마니아, 폴란드로 1차 피난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을 도우려는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교포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이들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 지원사역을 ¹²⁵⁾시작하게 됨. 또한, 국내 시민 단체와 함께 동포들의 입국과 체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 가족 초청 범위 확대, 장기 체류 허용, 여권 미소지자 (무국적자 포함) 대상 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시행하여 고려인들의 입국을 ¹²⁶⁾지원하였다.

II. 끝나지 않은 우리의 디아스포라 고려인, 160년의 아픈 역사

1. 고려인(고려사람)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¹²⁷⁾ 러시아어로 ‘카레이츠’(Корей цы)라 하고, 스스로는 ‘고려사람(Корё-сарам)’이라 부른다. 약 45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로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국내에는 2023년 5월 기준 약 11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2. 고려인의 이주 역사 - 조선에서 연해주로

123) 우크라이나 선교사, 고려인 지원연대 아리랑 대표.

124) 2001년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 자료 기준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 동포 12,711명과 타 국적, 무국적 고려인을 포함해서 약 3만 명으로 추정됨.

125) 광주 고려인 마을과 협력하여 약 1000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에게 항공권을 지원함.

126) 법무부와 (사)너머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5월 기준 약 3200여 명의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들이 국내 입국하였다고 봄.

127)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863년(철종 14년) 함경북도 북부지방에 살던 13 농가가 기근과 관리의 폭정을 피해 연해주 강변에 들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다.¹²⁸⁾ 1863년~1905년에는 주로 함경도 등지에서 가난과 관료의 학정에서 벗어나고 이주한 사람들이 다수였으나 1905년 이후부터는 점차 일본의 국권 침탈로 인한 이주와 망명이 늘어난다. 현대 사회에서도 전쟁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160년 전 우리나라 조선에도 최초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에 정착한 사례가 있음을 이렇게 역사가 증명해 준다.

이후 고려인의 이주 물결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당국의 통제를 넘어서 버렸고 1869년 12월에는 제정 러시아 연해주 국경 수비대장과 조선의 관리 사이에 이민통제 상호조약이 체결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한번 터진 이주민 노령 유입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1882년 1만137명, 1906년 3만4,399명으로 조사되었다. 30% 정도의 비공식 인구까지 포함하여 1910년 무렵 8~10만 명, 1917년에는 10~13만 명, 1927년에는 17만 명, 1931년 1월에는 19만9,500명 이상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¹²⁹⁾

조선에서 만세 시위가 있던 1919년 연해주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 그 다음 해 독립문을 본뜬 기념비가 고려인들의 정착지 신한촌에 세워진다. 이곳은 한반도로부터 여러 지식인이 모여들어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고, 한인 문화의 중심지이자 후에 항일 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¹³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기에 낯선 땅에서 조선의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었을까?

3. 제정 러시아의 이주 한인 귀화 조치 - 1884년 조러수호통상조약¹³¹⁾

당시 연해주 거주 한인은 원호(귀화인), 여호(비 귀화인, 일시 체류자)로 구분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세부류로 구분되었는데 1884년 국교 수립 이전 이주 한인은 약 1만여 명은 1부류로서 원칙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였는데 귀화조건은 조세, 노역, 군역 등 각종 의무 이행, 러시아 정교회 입회 등이었다. 또 귀화자에게는 약 4만9천 평의 토지를 지급하고 인두세는 영구히 토지세는 20년간 면제해 주었다

128) 1864년 9월 21일에 작성된 러시아 측 공식 보고서에는 1863년에 고려인이 연해주로 건너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려인 관련 단체나 정부 기관, 학계에서는 러시아 측 공식기록이 작성된 1864년을 고려인 노령이주 원년으로 삼고 있다.

129)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 (사)너머 1910년 이후 연해주 한인 인구통계.

130) “우리의 디아스포라 당신을 만나다” (사)너머 126쪽

131) 조로 수호 통상 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은 1884년 7월 7일(고종 21)에 조선과 러시아 제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러통상조약 또는 한러수호통상 조약이라고도 한다. 출처 위키백과

고 한다. 동시에 이러한 한인들에게 마을별로 호적을 만들어 주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었다.

국교 수립(1884년) 이후 이주 정착한 한인들은 2부류로서 러시아 비자를 발급해 주고 정착을 허용하였는데, 부역과 납세 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군 복무는 면제되었다. 3부류는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로서 조선 여권을 맡기고 1년짜리 체류 허가증을 발급받아 거주하였다. 1892년 이후 2, 3부류의 한인을 추방하기도 하였으나 1896년 프리아무르 총독으로 취임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두홉스코이(이하 두홉스코이) 중장의 우호적 정책이 러시아 이주 한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5년 이상 거주한 2부류 한인에게도 러시아 국적을 내주고 3부류 고려인에게는 내륙 정착을 허용하여 훗날 50개의 한인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1906년 러일 전쟁 후 새로 부임한 러시아의 극동지역 최고 책임자인 운테르베르게르는 한인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러시아 주민들이 한인들을 매우 선호했고 값싼 노동력에 유능한 소작농으로 이들의 인력이 매우 매력적이었기에 총독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다.¹³²⁾

이후 1911년에 운테르베르게르의 후임으로 총독이 된 곤닷찌(Nikolai Lvovich Gondatti, 1860~1946)는 한인 귀화장려정책을 펼치고 한인의 금광노동 사용을 허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인이 신속하게 러시아에 귀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렇게 조선의 난민들이 러시아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총독 두홉스키와 곤닷찌의 우호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한인의 러시아 이주와 정착이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한인 유용론자로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세우신 러시아의 관료이다. 어려운 시기에 연해주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애국계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이주민들을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법률을 마련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 저출산 국가로 들어섰고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인데 2022년 이미 17.5%를 넘어섰고 2040년에 34.4%를 예상하며 2026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¹³³⁾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에 따른 문제로 지방에는 일손이 없어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결방안은 두홉스코이 총독이 연해주 한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외국 이주민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법률적으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132) 극동에서 한인 문제에 대한 연해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의 보고서 일부 출처: 동북아 역사넷

133) 한국의 인구 구조 전망. 출처: 통계청 데이터

Ⅲ.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피난민(고려인 동포) 현황

1. 국내 입국 현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고려인 동포는 약 3,300여 명이 된다.¹³⁴⁾ 특별히 전쟁 피해는 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노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났다. 국내 입국 피난민 60%는 대부분 노약자와 미성년자이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연령층이 대부분이고 이들과 함께 입국하는 성인들의 경우 대부분 여성이어서 동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입국한 국내 입국 피난 동포와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셈이다. 조속히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야만 생존을 할 수 있다. (무국적, 동반 비자의 경우 합법적 취업이 어렵다-주)

Ⅳ.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의 장 단기 지원과 해결 과제

1. 단기 국내 정착 지원 - 3개월 초기 정착 프로그램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교포는 주로 연고자가 거주하는 안산, 인천, 청주, 아산, 광주 등 고려인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입국자 중에 무연고자와 무국적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안산시 사동에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하였음. (사) 푸른 나눔의 지원으로 월세 보증금 대납과 긴급 생계비, 생필품 지원을 하게 되었고 “3개월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 거주, 생계, 월세 지원을 함과 동시에 한국어 학습을 필수 이수 과정으로 넣어 초기 정착을 지원함.

2. 장기 국내 정착 장기적 지원:

한글 학교, 창업지원, 직업 훈련, 청소년 문화 공간 “잇다”

그동안 한글학교를 매개체로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교육 공동체로 성장하였다면 경제 공동체를 위한 창업지원으로 청소년 베이커

134) 법무부 이민정보과 제공 2022년 12말 기준

리, 바리스타교육, 캔들 공방을 열었고 성인 여성 지원자들에게 네일아트, 눈썹 문신, 두피타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무적응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잇다”)으로 보드게임 방을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전도의 장을 마련하여 한달에 한번 작은 콘서트를 하고 있다.

3. 국내 입국 난민의 해결 과제

1) 주거문제

입국 후 빚으로 시작하는 고려인 난민들. 이들은 주로 친인척, 또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월세 보증금 약 200~500만 원을 빌려 가족의 거주 문제를 해결함.

2) 생계문제

입국 후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당장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음.

3) 의료문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체류 6개월간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님.

4) 자녀 교육 문제

중도 입국 청소년의 국내 입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언어 소통의 문제로 국내 중고등학교 편입을 원하지 않음.

난민 보호의 관점에서 본 망명권 신설의 위험성:

난민법의 취약점과 유럽의 난민사태가 주는 시사점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abraham@pnan.org)

I. 서론

2017년 1월 여야합의로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도 신설하고자 한다고 한다. 망명권에 관하여는 인권보장의 세계화 추세를 고려해 망명권 조항을 신설하되 국내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한다는 게 대체적인 합의점이며 '망명권은 관련 국제조약을 존중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¹³⁵⁾

‘모든 사람은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타국에서 구하고 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라는 망명권은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4조, 1966년 UN 총회 비호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asylum), 1967년 UN 총회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에 의하여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된 바 있지만 모든 나라에 구속력 있는 국제관습법적 지위는 얻지 못하고 있다.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1951년 난민 지위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를 채택하였지만, 이 협약에도 비호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서명하였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 인정조항을 신설하여 1994년 7월부터 난민 지위 인정신청을 신청받기 시작하였고, 2013년 7월 1일 발효된 독자적인 난민법으로 더욱 상세한 난민 인정절차와 처우에 관한 규정을 갖게 되었다.

2017년 6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외국인은 누적 26,831명 (종결 16,617, 철회 3,107, 심사 중 7,107)이고, 이중 난민인정자는 703명(4.2%), 인도적체류허자자 1,369명(8.2%), 불인정자는 14,545이다. 2011년 이래 신청자가 한해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 5,711명, 2016년에 7,542

135) 2017.8.17. 내일의 신문, [새 시대 새 헌법] '검찰 영장청구 독점' 삭제 논의, 망명권도 보장키로,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7707

명, 2017년 전반기에 4,039명으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¹³⁶⁾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독립적 난민법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난민 보호제도에 더하여 헌법상의 망명권을 신설하는 것은 난민 보호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무의미하거나 자칫 독이 되는 것일까? 최근 난민신청의 급증은 전 세계적인 난민의 증가에 일부 기인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부분은 입국 및 비자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난민제도의 허점을 외국인들과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는 결과인데, 헌법상의 망명권 신설이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어 진정한 난민 보호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의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개정에 있어서 외국인의 망명권을 헌법적 권리로까지 고양하고자 함이 진정한 국민적 합의이며 지금 헌법을 개정할 만큼의 절박한 요구인가?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판정하고 그들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헌법에 망명권을 신설하면서 국민은 그 부담을 진지하고 고려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 돈을 낼 각오를 하는 것인가?

II. 망명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1. 외국의 입법례

대부분 나라는 헌법에 망명권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으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체코가 헌법에 망명권 규정이 있으며,¹³⁷⁾ 유럽기본권헌장 18조가 망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¹³⁸⁾ 중국 헌법 32조도 외국인의 망명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¹³⁹⁾ 망명권의 개념은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정치적 망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난민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정치적 사유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등의 사유로 확대되어

13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자료실 No. 202. 2017년 6월호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월보, p.33

137) 김선희, 난민신청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2015, 헌법재판연구원, p. 85.

138)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2010) Article 18(Right to asylum) : The right to asylum shall be guaranteed with due respect for the rules of the Geneva Convention of 28 July 1951 and the Protocol of 31 January 1967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망명권은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51년 7월 28일의 제네바 협약과 1967년 1월 31일의 의정서의 규정 및 유럽공동체 조약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139) 중국헌법 제32조 (외국인에 대한 보호)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중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인하여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

비호권 내지 난민권의 이름과 혼용되고 있다. 비호권이 개인의 권리인지 국가의 권리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비호를 요청하는 개인의 권리가 아닌 비호하는 국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국가의 비호권에는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영토적 비호권과 외교공관 등이 도망자를 숨겨주는 외교적 비호권이 있다.

헌법에 망명권을 규정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있어서조차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비호권은 국가의 특권으로서의 비호권과 갈등하는 관계에 있으며, 비록 세 나라가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서 헌법상 망명권 규정을 갖게 되었으나 지금은 난민협약과 EU 난민규정이 모든 나라에서 일차적인 난민 보호의 규범이 되고 있으며 헌법상의 망명권 규정은 형해화 되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헌법상 개인의 비호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고, 독일에서도 난민협약과 EU 규정에 따른 난민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망명권 규정은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퇴화 규정이 되었다.¹⁴⁰⁾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망명권을 공화적 전통의 유산으로 보전하고 기념하고자 하면서도 EU법과 행정판례가 부과하는 각종 한계와 제한들을 수용함으로써 결국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보호가 1차적 보호기준이 되고 헌법상의 비호는 형식상 쉽게 언급될 뿐 보충적이고 2차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방법원 차원에서는 헌법상 비호권을 명목상 규정이 아닌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려는 다년간의 노력이 있었으나, 비호권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후에도 개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이행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헌법상의 망명권은 주변으로 밀려났고 오로지 난민협약만이 난민에 대한 명시적이고 1차적인 보호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일찍부터 주권이 헌법상의 비호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우선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보호와 각 주의 난민실무를 제약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국민여론과 EU의 압박에 밀려 헌법상의 비호수준이 난민협약이나 EU법의 수준으로 회복된 결과 이제는 헌법상의 비호권이 무의미한 중복규범이 된 상황이다.¹⁴¹⁾

중국은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망명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난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난민인정절차조차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비호를 요구하는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국제사회의 거둬들인 탈북난민 북송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탈북난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하여, 최근에는

140) Hélène Lambert Francesco Messineo, Paul Tiedemann, "Comparativ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Asylum in France, Italy, and Germany: Requiescat in Pace ?", Refugee Survey Quarterly, Volume 27, Issue 3, 1 January 2008, pp.16~32. 참조.

141) Hélène Lambert Francesco Messineo, Paul Tiedemann, 위 같은 논문, p.32.

북송 중이던 탈북자 가족 5인 강제북송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¹⁴²⁾ 이로 보건대 헌법상의 망명권 규정은 장식에 불과할 수 있으며 실질적 난민 보호는 헌법상 망명권 규정과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역사적 이유로 헌법상 망명권 규정을 가지게 된 몇 되지 않는 나라들에서조차 헌법상 망명권이 형식적이고 퇴화된 규정으로 남아있고 난민 보호의 일차적 기준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된 마당에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을 가진 우리나라가 망명권이라는 장식품을 헌법에 들여놓기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통설과 판례는 권리성질설에 입각하여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소수설의 입장에 서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아닌 외국인의 망명권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게 된다.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헌법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통설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거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¹⁴³⁾

“학계의 통설적 견해와 우리 재판소의 선례, 그리고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어 ‘인간의 권리’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 헌법 문언상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기본권 주체의 인정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실정 헌법의 해석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명문으로 과연 ‘누구’를 기본권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 헌법제정사가 보여주는 헌법제정권자(국민)의 진의를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규정은 기본권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 그 어디에도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 대해서까지 기본권을 인정

142) 2017.7.24. 동아일보, “中서 체포 탈북 일가 5명, 북송 중 자살”, <http://news.donga.com/3/all/20170724/85489873/1>

143) 이하 2011년 9월 29일 선고 2007헌마1083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이유에서 인용

하거나 ‘인간’과 ‘국민’을 개념분리하여 기본권별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통설적 견해와 선례가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평등권(제11조 제1항) 등에 대해서나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선거권(제24조)이나 공무담임권(제25조) 등에 대해서나 헌법은 구별 없이 모두 「모든 국민」으로 그 주체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의 제정사적 배경에서 살펴보면, 건국헌법제정 당시 기본권 규정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 끝에 헌법제정권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용어로 결단했다. 이때 국민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 보장의 방법으로써 외국인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고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이 헌법 하위에 있음을 전제로(건국헌법 제7조 전문, 현행헌법 제6조 제1항에 해당) 건국헌법 제7조 후문(현행헌법 제6조 제2항에 해당)을 통해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써 정리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헌법을 문리적으로 충실하게 해석함과 동시에, 우리 헌법제정사에서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관한 건국헌법 제7조의 도입 경위 등을 종합하면, 우리 헌법 제정권자는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에서는 일단 배제토록 하고, 반면 그들에 대한 보호는 외국인 보호를 위한 헌법 하위의 규범인 국제법과 조약 등을 통해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헌법의 설계를 했다고 봐야 한다.

둘째, 국가와 헌법 그리고 기본권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관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만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없으면 헌법도 없고 헌법이 없으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기본권도 관념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이나 인간의 권리’라는 것도 헌법에 ‘수용’됨으로써 비로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우리 헌법은 특수한 존립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란 사회공동체를 전제로 하므로, ‘인간의 권리 내지 인권’도 우리 헌법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공동체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시대적 상황 등에 맞게끔 수용될 수밖에 없다.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가 헌법 이전에 이미 존재하여 생래적·천부적인 것으로도 명칭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국가권력의 기본권에의 기속을 규범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우리 정부를 구속하

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해 수용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는 헌법상 기본적 의무와 표리를 이루므로 양자는 그 주체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주권주의 헌법의 기본적 요청이므로, 기본권의 주체는 기본의무의 주체와 동일해야 한다.

우리 헌법도 이에 부응하여 기본적 권리의 주체도 「모든 국민」, 기본적 의무의 주체도 「모든 국민」으로 하여 양 주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38조 및 제39조 제1항). 그런데도 기본적 의무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넘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관념해 양자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기본적 권리 쪽에서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초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은 기본적 권리, 기본적 의무를 대등한 두 축으로 해 구성된 우리 헌법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해석론이 되기 쉽다.

넷째, 외국인의 지위는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우리 법질서가 수용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거조항이며, 오늘날 외국인의 보호에 관하여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관례는 상호주의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상호주의원칙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본권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헌법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우리도 그 국가 국민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인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그 나라의 헌법은 우리 국민을 어떻게 처우하는지 묻지 않고 널리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상호주의원칙을 취한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이지 국제헌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과잉 세계화로 나가는 것은 우리 헌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통설적 견해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한 공

통된 비판이유의 요지는 “오늘날 세계가 일일생활권화되어가고 기본권 보장이 점차 국제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시대 역행적”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미래에 세계가 일원화될 경우를 예상해 해석으로써 지금의 우리 헌법을 명문 규정에 어긋나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때가 되면 우리 헌법제정권력자가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기본권별로 주체성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외국인의 지위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미래를 예단하여 일방적으로 진취적인 견해를 취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섯째, 헌법재판 실무처리의 관점에서 보아도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위 다수의견의 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검토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 본안으로 들어가 판단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본안에 가기 전에 각하해야 한다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들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심지어 하나의 기본권을 내용에 따라 어떤 부분은 인간의 권리고 어떤 부분은 국민의 권리라고 나누기까지 한다면 그 구별기준이 더욱 불명확해진다. 특히 다수의견 중 재판관 5인의 의견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과 관련을 맺지 못할 기본권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자격이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그 성질을 검토해 본 후에야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판단의 순서가 역행되어 부당하다.

위 재판관 5인의 의견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외국인고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한 자들이라는 이유로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기본권 주체성의 일반적·추상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

여섯째,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헌법에 기한 기본권을 직접적 권원으로 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외국인을 헌법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외국인은 얼마든지 법률적인 효력 등을 가지는 국제법이나 조약 등에 의하여

충분히 그 지위가 보장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수용하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1006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1007호)에 의하여 외국인도 국민과 거의 차별 없이 우리 헌법이 정한 각종 기본권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도 국민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 것은 아니며 단지 헌법 하위의 규범인 법률과 조약에 의해 내국인과 동등한 법률상·조약상 권리를 얻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권리주체로서의 외국인은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회복을 위하여 일반법원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송 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우리 헌법상 외국인 보호를 위한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그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해고 무효확인 등을 제기하면서 위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면 된다.

3. 반국가 반사회적 외국인의 국내 망명 대책

한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통설과 판례인 권리성질설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되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구분하여 외국인을 “인간의 권리”의 주체로 보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고, 생존권적 기본권과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¹⁴⁴⁾

이러한 통설과 판례를 따라 헌법에 망명권이 신설되는 경우 대한민국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규정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국가를 향한 메시지요 성질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국인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경우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다는 뜻이 되며, 이차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도 그곳에서 박해가 있으면 우리나라로 도망오라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의 해외탈출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헌법에 망명권이 신설되는 경우 우리 국민이 망명권을 이유로 북한이나 적국으로 탈출하여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144) 김선희, 앞의 책, p. 26.

한편 외국인에 대한 망명권 보장은 박해를 당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홍보문구와 대한민국 정부는 도망오는 모든 외국인을 박해로부터 보호하라는 명령규범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이 망명권을 신설하는 경우 부득이 박해를 당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홍보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파될 수밖에 없다. 헌법에 망명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헌법에 의한 비호권부여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망명권신설 소식은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탐뉴스가 될 것이다. 홍보에 따라 과연 많은 외국인이 망명을 주장하며 한국으로 입국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 우리는 그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북한이나 적국과 내통하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반국가적 외국인이 망명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입국을 요구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률과 문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고 사회통합할 의향이 없이 게토화되면서 전통사회와 갈등을 초래할 샤리아법이나 할랄 등과 같은 법과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반국가 반사회적 의도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난민협약 이외에 헌법상의 망명권을 주장하며 입국과 체류를 요구하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명분으로 그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굳이 헌법까지 고쳐가면서까지 국제사회에 난민의 유치를 홍보할 만큼 우리 국민이 외국인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 특별한 동기나 계기는 있는 것인가?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예측과 대응 능력을 갖추고 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인권감성으로 망명권을 헌법에 삽입하는 것이라면 허울좋은 망명권 규정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교두보와 통로가 되어 오히려 진정한 난민보호의 문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망명의 의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헌법상의 망명권 규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타국에 있는 한 우리 헌법이 거기까지 미칠 수는 없고 결국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관할권 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외국인이 우리 관할권 내에 들어왔다면 그 외국인은 이미 우리나라에 망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망명권이 있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망명한 외국인의 체류와 처우를 보장이 헌법상 망명권신설의 의미라면 이미 보장되고 있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난민 보호와 중복될 뿐이고 난민신청의 무한반복(공항회부절차, 난민인정1차심사, 이의신청, 1심재판, 2심재판, 3심재판, 재신청...)을 적절히 통제하고 합리화하여 절차의 신속과 공정을 강구하여야 할 마당에 헌법소원이라는 구제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우리난민제도의 발전방향인지도 의문이다.

4. 책임과 경계

권리 보장을 위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하고 기본권 보장 의무의 주체는 그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라고 하는 경우 국민국가 단위에서 권리와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여진다. 이것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기초이고 세계가 민족국가 단위로 구분되어 국경이 설정되고 국민과 외국인의 구분이 나뉘어 유지되어온 국제질서이다. 국경이라는 경계와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의 국민은 자기 나라에 대한 소속감으로 사랑과 충성심을 가지게 되며 자기의 나라를 돌보고 가꾸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된다. 만일 국민이라는 한계도 없어지고 국경도 무너지며 모든 국민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개념만 존재하게 된다면 아무도 국가를 돌보는 책임을 담당할 사람이 없고 권리만을 요구하여 사회가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국경은 악한 것이 아니며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은 차별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데는 합당한 통제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권리에 제한해야 함은 국민과 외국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권 보장의 범위가 국민을 넘어 사람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려면 모든 사람이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외국인에 대하여도 국민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에게 귀착되어 권리를 요구하는 외국인들이 무임승차하게 되는 경우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으로 사회가 병들고 이에 대한 반발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70%의 수분으로 구성된 우리 몸이 세포막이라는 경계 때문에 단단하게 설 수 있고 세포막이 없다면 온몸이 물처럼 흘러내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국경이라는 경계는 건강한 국가를 위하여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온몸의 세포막과 같은 경계가 국경이라는 보호막이며 세포막 사이로 삼투압을 따라 수분과 영양이 드나드는 것이 국경은 따라 조심스럽게 이주하는 건강한 난민의 국제이주인 것이다. 외국인의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난민의 이름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망명권 보장이 건강한 국경통제를 교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폐쇄로 삼투압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장벽을 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바이로되 외국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이상을 좇아 진지한 국민적 합의 없이 국경통제를 포기하는 것은 세포막을 파괴하여 몸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할 경우 국방의무와 같은 국민의 기본의무도 외국인에게 지라고 할 것인지? 북한인권은 우리인권이 아니고 북한내부의 상대적 인권 내지 주권문제라고 하는 분들도 외

국민의 인권은 사람의 인권이므로 우리의 인권이라고 하실 것인지?

III 유럽 다문화주의 실패의 교훈과 사회통합 과제

1. 유럽 다문화주의 실패의 교훈

유럽은 한 때 다문화적 이민사회의 모델과 같은 사회로 받아들여지곤 하였다. 하지만 2005년 7월과 2015년 12월에 일어난 영국 런던의 지하철 테러, 2017년 5월의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 테러, 2015년 11월 파리 일대 7곳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2016년 7월 프랑스 니스, 2016년 12월 독일 베를린, 2017년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일어난 차량돌진 테러 등 유럽의 각지에서 발생하는 끊임 없는 테러의 배후에는 대부분 사회통합에 실패한 무슬림 이민자나 그 2세들이 있었다. 유럽 사회는 비교적 개방적으로 난민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수많은 재정지원과 사회복지 정책을 폈지만 끝내 무슬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2010년 10월과 2011년 2월에 걸쳐 영국, 프랑스, 독일 각국의 정상들이 자국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 2015년 9월 2일 아침 터키의 지중해변 휴양지 보드룸 해변에서 모래에 얼굴을 묻은 채 엄마 품에 잠자듯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을 계기로 100만의 난민을 독일로 받아들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한때는 독일의 다문화주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10월 16일 포츠담에서 열린 CDU 청년당원 대상 연설에서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함께 어울려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¹⁴⁵⁾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소극적 관용을 원칙으로 하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영국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무슬림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삭감하겠다고 하였다.¹⁴⁶⁾ 이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2011년 2월 10일에 프랑스의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그것은 실패했다"라고 선언했다.¹⁴⁷⁾

145) 2015.1.13. 연합뉴스, 메르켈, 4년 전 "다문화 완전실패"...지금은 "다양성 존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3/0200000000AKR20150113184800082.HTML?input=1195m>

146) 2011.2.7. 국민일보, 英총리 "다문화주의 실패" 논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614496>

147) 2011. 2. 11. 문화일보, 사르코지도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211010319320230040>

2. 미국과 캐나다의 사회통합 성공모델

유럽 다문화주의의 실패 교훈이 반드시 난민의 수용을 두려워하고 반대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민사회의 또 하나 모델인 미국 캐나다는 유럽과 다른 난민수용과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호신청자들을 수용하여 장기간 국고에 의한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와 달리, 미국은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인정에는 비교적 엄격하지만,¹⁴⁸⁾ 전세계에서 수용되고 있는 연간 약 10만 명의 재정착 난민 가운데 80%인 약 8만 명의 난민들을 매년 미국으로 수용하여 이들의 성공적 사회통합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역시 전세계 재정착 난민의 10%인 약 1만 명가량을 매년 수용할 뿐 아니라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인정도 비교적 공정하고 너그러운 모범적 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호신청자에 대한 캐나다의 난민판정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난민심사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난민심사관(adjudicator)에 의하여 준비절차와 청문을 거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62%의 높은 난민인정율을 보여주고 있다.¹⁴⁹⁾

난민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은 아니며 자신들의 기본적 필요는 사회 및 국가와의 협업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자신이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주도력이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접근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민간주도 취업자립형이라 할 수 있고 유럽은 국가주도 사회복지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난민정착지원프로그램의 최우선 목표가 단시간(4~6개월) 안에 취업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하는 경제적 통합이며, 이를 위하여 언어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금지원은 경제적 자립 의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유럽에서의 난민사회통합 정책은 언어 문화에 치중되어, 난민이 취업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2년 반 내지 3년(영국 1년, 포르투갈 6개월) 소요되고, 그동안 난민들은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난민들에게 비교적 장기간의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유럽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의 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난민들이 정착에 실패하여 사회적

148)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은 비호신청에 대한 87,948건의 결정가운데 20,437건의 인정결정을 내려 23%의 인정율을 보임 (UNHCR,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6, 19 Jun 2017, Attachments: 2016 Global Trends Annex Tables (.zip), Table 9. Asylum applications an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by country/territory of asylum, 2016)

149) 2016년 한 해 동안 캐나다는 비호신청에 대한 16,449건의 결정가운데 10,226건의 인정결정을 내려 62%의 인정율을 보임 (위 주석의 같은 통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심지어 테러도 일으키고 있지만, 난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초단기(원칙상 3개월)에 그치며 그 기간 ‘first job, any job’의 겸손한 정신으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에 올인하는 미국은 전세계 난민의 80%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국가의 짐이 되기 보다는 자원이라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로 난민을 수용하는 이민국가이므로 난민의 규모나 제도 면에서 우리와는 너무 다른 나라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제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한 도시나 마을 등 지역사회단위로 살펴보면 난민의 규모나 정착과 관련된 문제들이 기본상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와 비슷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 난민사회통합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단기신속 취업 강조 정책에 대하여는 난민은 실업자와 달리 박해로 인한 충격을 가지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며 지지기반이 없는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므로 취업에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트라우마, 질병이 있거나, 취업경험이 없는 무슬림 여성, 장기캠프난민 등 취업에 곤란한 사람들이 있으며, 신속한 취업의 강요로 경력과 전문지식을 살리는 일자리를 찾거나, 보수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는 언어장벽까지 있어 1년은 언어를 배우고 취업하여 정착을 기대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며 2년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쪽의 시각이다.

IV 난민법의 취약점과 개선과제

1. 난민법의 제정

피난처를 비롯한 난민지원단체와 변호사들이 마련하여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2013.7.1. 발효된 대한민국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으로 알려져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종래 한국의 난민제도에 관하여는 난민 인정절차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통역과 변호 등 절차보장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난민법에서 난민의 신청방식(5조)과 처리 기간(18조4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6조), 신청필요정보의 게시(7조), 통역(14조), 변호(12조),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13조), 동성의 면접관요구권(8조2항), 면접과정의 녹음·녹화요구권(8조3항), 면담조서의 확인(15조), 열람·등사(16조), 인적사항의 공개금지(17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20조), 심리의 비공개(23조), 이의신청(21조), 난민위원회(3장)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정비되

었다. 난민심사 및 인정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난민법은 면접과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두고(8조4항), 난민위원회는 정책기능을 없애고 이의심사기구로 하였으나(25조, 26조),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로서의 조직과 기능은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 심사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난민법에서는 1차결정과 이의결정을 원칙상 각 6개월 내로 하고(18조4항, 21조7항), 간이신속절차를 두었으며(8조5항), 3회 연속 불출석 시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8조6항).

처우와 관련하여 그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마저 금지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것이었는데, 난민법에서는 모든 난민신청자(2조4호 이의신청 중이거나 소송 중인 신청자를 포함)에 대한 강제송환금지(3조)와 체류허가(5조 6항)는 물론 생계비(40조1항), 주거(41조), 의료(42조), 교육지원(43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40조2항), 소송 중인 신청자와 재신청이나 체류 기간 연장목적의 남용신청이라는 이유로 간이절차(8조5항)로 심사되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지만, 취업 허가는 여전히 가능하도록 하였다(44조). 난민법 시행과 함께 난민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가 이루어졌고, 난민신청자의 약 10% 미만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생계비예산이 확보되어 질병, 임신, 모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 우선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입국자에 대하여 6개월간 월 약 42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다.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31조), 기초생활보장(32조), 교육보장(33조), 사회적응교육(34조) 등 규정을 두어 그간 개별법에 난민규정이 없어 초래된 법 적용의 어려움을 바로잡았고, 학력인정(35조), 자격인정(36조) 및 가족결합(36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난민 인정자의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과 난민신청자의 주거 및 의료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45조), 영종도에 82명 수용 규모의 출입국외국인(난민)지원센터가 개설되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하여는 체류 허가(2조3호)와 취업활동의 허가(39조) 외에 처우 규정이 없어 문제로 남아있다.

2. 난민법의 취약점

현행 난민법의 가장 큰 허점 가운데 하나는 공항에서의 회부절차와 이에 대한 사법심사절차, 난민 인정 1차 심사절차, 이의심사절차, 1심재판, 2심재판, 3심재판, 재신청, 소송 등으로 무한반복되고 장기화되는 난민신청절차를 어느 단계에서도 합법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난민신청사유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박해의 우려가 있음을 거짓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난민신청과

소송 및 재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난민인정절차가 종료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합법적 체류연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인을 무죄라 추정하고 죄를 범하였음이 입증될 경우 확실한 범인에 대하여만 처벌하는 형사법과 반대로, 난민법은 모든 신청자를 강제로 돌려보내면 위험이 있을 것이라 일단 추정하여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박해의 가능성이 십 중 한둘만 되어도 난민으로 인정하는 너그러운 제도이다. 너그럽고 유순한 난민제도는 불순한 목적으로 입국과 체류의 비자 수단을 찾는 외국인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고, 누적난민신청자 상위 국가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중국 등과 무비자국으로서 최근 난민신청이 급증한 이집트 등을 배경으로 난민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난민신청 절차를 이용한 비자 획득 방법을 안내하는 브로커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직 공무원이 낀 난민신청 브로커조직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2013년 제주지역 난민신청자는 1명이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85명, 2016년에는 263명으로 폭증되었다.¹⁵⁰⁾

그러나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난민신청을 처벌할 방법이 없고 그 신청접수를 거부하지도 못하므로 신속히 종결하지 못하면 난민신청사건의 적체와 지연, 지연되는 절차로 말미암아 누리는 장기적 체류 혜택을 노리는 신청의 급증, 거짓신청의 증가로 말미암은 신뢰붕괴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과 난민인정율의 저하, 공정한 판정을 받지 못한 난민 불인정자들의 재신청 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한국 난민제도의 과제는 진정한 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널리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장난민들은 신속하게 절차남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지, 망명권의 헌법신설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3. 절차의 신속화 방안

난민인정절차의 신속화는 난민제도의 생명이다. 증가하는 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진정한 난민들은 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가장난민들은 지연되는 절차로 말미암은 체류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몰려들어 또다시 절차가 더욱 지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난민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 심사인력의 증원이 있어야 한다. 심사인력의 증원없는

150) 2017. 7. 20. 제주의 소리, 난민신청 제도 악용 브로커조직 적발, <http://blog.daum.net/halfeyebrow2/15707443>

신청자 증가는 난민제도에 재앙이다. 그러므로 난민의 망명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헌법에 망명권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adjudicator와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사인력의 증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외국의 난민 사건의 심사 기간은 영국 30일, 호주 90일, 뉴질랜드 140일 등이고 우리 난민법은 1차 심사와 이의심사에 대하여 각각 6개월의 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건이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으며 소송과 재신청이 반복되면 심사 기간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 재신청은 원칙상 새로운 사유나 중대한 사정변경에 기초하여서만 할 수 있지만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도 사정변경이 있는 정당한 재신청인지 사정변경 없는 부당한 재신청인지를 심사 때문에 가려야 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난민법 8조5항 2호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으로 인정되는 경우 절차의 일부를 생략한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 뿐이다.

신청 적격성(eligibility)을 판별하기 위한 영국의 예비면담(screening interview) 제도,¹⁵¹⁾ 캐나다의 회부 적격심사와 불회부제도,¹⁵²⁾ 네덜란드의 난민심사 준비제도(Rest and Preparation Period)¹⁵³⁾ 등을 참조하여 보호의 필요가 비교적 명백한 사건과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에 대하여는 심사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과 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의심사와 사법심사의 구조도 개편하여 별다른 구제의 실익도 없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절차의 공정화 방안

절차가 공정하여, 주장하는 이유가 통역과 변호를 통하여 잘 경청되며, 판정이 납득할만하고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난민신청자들은 판정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므로 절차는 끝나지 못한다. 또한, 난민인정율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낮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신청을 거부해도 거부처분의 결과를 신청자들에게 승복시킬 수 없다. 2017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율은 4.2%,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포함하면 보호율은 12.4%인데, 2017년 6월 15일 현재 유럽 연합의 난민인정율은 제1차 심사에서만 50%이고, ¹⁵⁴⁾ 국가와 UNHCR 모두에 의한 2014년 말 현재 전 세계 난민인정율은 27%, 보충적(인도적) 보호를 포함하면 59%에 이른다. ¹⁵⁵⁾ 아무리 가장 난민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만 가장난민

151) <https://www.gov.uk/claim-asylum/asylum-interview>

152)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inside/apply-how.asp>

153) <https://www.government.nl/topics/asylum-policy/asylum-procedure>

154) Euro Stat, Asylum Quarterly Report,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Asylum_quarterly_report

신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중요한 것은 난민인정율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의한 정확한 판정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적 난민인정율에 비하여 우리의 인정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면 다시 한번 난민인정을 제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박해발생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아서 제3자인 판정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정도의 박해발생 가능성이라도 당사자 본인은 그 위험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으며 박해발생의 가능성은 미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가능성이라도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 한 난민인정 외의 방법으로 귀국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귀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난민인정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박해발생의 위험이 소멸할 때까지는 그가 귀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2010년 실시된 난민실태조사에서 난민인정이 불허될 경우의 계획에 관하여 응답자들은 난민인정이 불허되었거나 만약 장차 불허될 경우라도 전체 304명 중 194명, 63.8%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머물 것이라고 답변하여 제3국으로 출국(54명, 17.8%)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16명, 5.3%)이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¹⁵⁵⁾ 그러므로 비록 희미해 보일지라도 박해 발생의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신청자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난민 인정을 거부하고 귀국을 강요하며 신청자는 쫓겨나는 것을 면하고자 소송과 재신청을 반복하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절차에 빠지기보다는 난민 인정을 통하여 스스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5. 사회통합 방안

한국의 기독교계는 망명권 조항의 신설이 무슬림 세계화를 표방하는 과격하고 공격적인 무슬림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문화와 종교법을 내세우며 진지를 구축한 후 점차 그들의 질서를 강요하고 사회를 점령하는 교두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기독교 사회였던 유럽이 무슬림에 점령되어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생기를 잃었으며, 레바논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무슬림국가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슬람화되었고 이슬람세계는 외부세계에 개방적이고 민주화가 이루어져 이슬람에 대한 비판이 종교나 문화적 인종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는 한국을 차기 이슬람화 목표국가로 선정하여 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한국 이슬람 중앙회는 한국이슬람전파 50주년을 맞은 2005년 ‘한국 이슬람 50년사’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155)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4, p.55. <http://www.unhcr.org/56655f4cb.html>

156) 김현미,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010, p.212.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한 미래선교계획으로 1) 마스지드(회교사원) 건립, 2) 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 3) 이슬람 문화센터 설립, 4) 꾸란의 새로운 번역 추진, 5) 이슬람 대학 건립, 6) 이슬람 관련서적 출판, 7) 국제결혼을 통한 무슬림 자녀 출산 등의 전략으로 10년 후 4500만 한국인의 대부분(many of 45millions of Koreans)이 무슬림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¹⁵⁷⁾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고 동화주의로 선회하면서 자국에 이주한 무슬림들에게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뒤늦게 비호국에 들어와 살면서도 비호국의 법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게토화되는 무슬림의 사회통합과제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절박한 과제가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한 무슬림들의 출신국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서아프리카 국가들이었는데,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이래 시리아, 이집트, 예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출신의 무슬림들이 난민신청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슬림 난민신청자들은 종교적 언어적 이유로 한국인들과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아직은 주류사회를 향하여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이슬람화된 유럽의 사례에서와같이 그들이 목소리를 내며 그들의 종교법과 종교문화로 우리사회를 정복 내지 동화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는 무슬림들과 함께 산 다문화적 사회통합의 경험이 없으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에서 경험한 테러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명권을 헌법에 선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민의 유입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들어오고 또 들어올 무슬림들과 함께 동화적 통합을 이루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조심스럽게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몇몇 나라에서 역사적 유물로 헌법에 삽입되었지만, 난민협약의 제정 이후에는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규정으로 퇴화하고 있는 망명권 규정을 별다른 검증이나 역사적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헌법에 도입하는 것은 국제인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달리 자칫 남용의 도구가 되어 오히려 진정한 난민 인권 보호에

157) 한국이슬람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 한국 이슬람 50년사, 2005, pp. 38~40: <http://www.islammission.org/news/2006/ne060228.htm> 에서 재인용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난민 보호의 과제는 오히려 난민 인정제도를 합리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인데, 보호가 필요 없는 난민들이 망명권을 주장하며 선의의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난민제도에는 과도한 부담이 주어질 진정한 난민 보호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민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난민제도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 별다른 계기나 절박한 필요도 없이 헌법개정이라는 비상수단으로 헌법적 권리로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개헌특위의 아이디어를 넘어 헌법개정 권력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의 기본권으로 바꾸어 외국인의 기본권도 차별 없이 보호하고 망명권의 선언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의 관문을 더욱 넓게 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체질을 민족국가에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바꾸는 중대 결단이다. 그러므로 그 결단은 전 국민이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내려져야 하며, 테러로 얼룩진 유럽의 실패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교훈을 참고하여 변화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난민은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판정하고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며 우리 사회에 적응하며 기여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인내와 비용이 들어가는 오랜 과정이기 때문에 망명권 도입을 논의하면서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국가의 세금이나 다른 사람 기업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하여 보아야 한다.